

연구보고 2014-01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서문희 이혜민 이원선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 해마다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 지역별 자율공부모임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원기준과 금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인이나 운영자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정부도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성 높은 보육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는 크다. 그러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정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지원하는 방법과 지원 수준의 한계로 인하여 선정기준이나 운영기준도 그리 높고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는 현행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질을 제고하고 부모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보고서가 보육정책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 현장 관계자 및 학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차 례

요 약 .....	1
I. 서론 .....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6
4. 선행연구 .....	7
II.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의 적절성 .....	9
1. 공공형어린이집 개요 .....	9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관련 의견 .....	16
3. 요약 및 시사점 .....	34
III.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과 재정 .....	41
1.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41
2. 공공형어린이집 세입·세출 .....	47
3. 요약 및 시사점 .....	68
IV.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사후관리 .....	71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	71
2.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	75
3. 시사점 .....	82
V. 결론 및 제언 .....	83
1. 정책제언 .....	83
2. 맺는 말 .....	87
참고문헌 .....	88
부록 .....	91

## 표 차례

〈표 II-1- 1〉 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 현원 및 교사 수: 2014. 4월 기준 .. 10	10
〈표 II-1- 2〉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유형: 2011~2013 .....	11
〈표 II-1- 3〉 지역구분 및 설립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 수 및 비율 .....	12
〈표 II-1- 4〉 지역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 현원 및 교사수 .....	13
〈표 II-1- 5〉 연도별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점수 구분 .....	13
〈표 II-1- 6〉 1급 보육교사 비율 .....	14
〈표 II-1- 7〉 시설유형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	15
〈표 II-1- 8〉 시설유형별 건물소유형태 .....	15
〈표 II-1- 9〉 지정 연도별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 .....	16
〈표 II-2- 1〉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기본 조건 .....	17
〈표 II-2- 2〉 기본 신청 자격 기준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	17
〈표 II-2- 3〉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제외 기준 .....	19
〈표 II-2- 4〉 신청 제외 기준 적절성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	20
〈표 II-2- 5〉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제한 기준 .....	20
〈표 II-2- 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 2014 .....	21
〈표 II-2- 7〉 선정 기준 점수와 우선순위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	22
〈표 II-2- 8〉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형별 총점 평균 .....	23
〈표 II-2- 9〉 선정 점수 배점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 23	23
〈표 II-2-10〉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관련 점수 .....	24
〈표 II-2-11〉 평가인증 관련 점수 분포 .....	24
〈표 II-2-12〉 선정 점수 배점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 25	25
〈표 II-2-13〉 임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 감점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	25
〈표 II-2-14〉 어린이집 유형별 건물 소유 점수 평균 .....	26
〈표 II-2-15〉 건물 소유 형태 배점 .....	26
〈표 II-2-16〉 1급 보육교사 비율 항목의 적정성과 변별력: 보육관계자 의견 .. 27	27
〈표 II-2-17〉 선정 시 가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 27	27
〈표 II-2-18〉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교직원 전문성 평균 .....	28
〈표 II-2-19〉 선정 시 1급 보육교사 비율 점수: 30점 만점 .....	28

〈표 II-2-20〉	교사 급여 지급 기준: 가점 .....	28
〈표 II-2-21〉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감점 .....	28
〈표 II-2-22〉	원장 재직 경력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	29
〈표 II-2-23〉	선정 시 가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	30
〈표 II-2-24〉	원장으로서 재직 경력 분포 .....	30
〈표 II-2-25〉	원장 및 대표자 관련 가점 받은 비율 .....	30
〈표 II-2-26〉	취약보육 배점과 변별력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 관계자 의견 .....	31
〈표 II-2-27〉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	31
〈표 II-2-28〉	취약보육 배점과 변별력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 관계자 의견 .....	32
〈표 II-2-29〉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기본 점수 .....	33
〈표 II-2-30〉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	33
〈표 II-2-31〉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가점 배점 .....	34
〈표 II-2-32〉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점수 산정 기준 .....	36
〈표 III-1- 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	41
〈표 III-1- 2〉	공공형어린이집 국고 지원 예산액 .....	41
〈표 III-1- 3〉	국공립과 서울형 인건비 지원 기준 설정 .....	42
〈표 III-1- 4〉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표준안: 50~62인, 정원 100% .....	43
〈표 III-1- 5〉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표준안: 50~62인, 정원 80% .....	43
〈표 III-1- 6〉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안 .....	44
〈표 III-1- 7〉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충족률별 기본모형별 수입 비교 .....	45
〈표 III-1- 8〉	운영비 지원 체계 개선안: 보육관계자 의견 .....	46
〈표 III-2- 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총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 .....	47
〈표 III-2- 2〉	어린이집 유형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	48
〈표 III-2- 3〉	20~62인 이하 어린이집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	50
〈표 III-2- 4〉	63~111인 이하 어린이집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	51
〈표 III-2- 5〉	112인 이상 어린이집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	52
〈표 III-2- 6〉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여부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	53
〈표 III-2- 7〉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	54
〈표 III-2- 8〉	어린이집 유형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	56

〈표 III-2- 9〉 유형 및 정원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76인 이하 .....	57
〈표 III-2-10〉 유형 및 정원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77인 이상 .....	58
〈표 III-2-11〉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여부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	60
〈표 III-2-12〉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	61
〈표 III-2-1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항목별 지출 규모 .....	63
〈표 III-2-14〉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급간식비 .....	64
〈표 III-2-15〉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	64
〈표 III-2-16〉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	65
〈표 III-2-17〉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필요경비 지출 .....	66
〈표 III-2-18〉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운영비 .....	66
〈표 III-2-19〉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금액 .....	67
〈표 III-2-20〉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금액 .....	68
〈표 IV-1-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	71
〈표 IV-1- 2〉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기준 .....	73
〈표 IV-1- 3〉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보육관계자 의견 .....	73
〈표 IV-1- 4〉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부모조사 결과 .....	74
〈표 IV-1- 5〉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필요 경비: 부모조사 결과 .....	75
〈표 IV-2- 1〉 자율공부모임 기본과정 대상 및 내용 .....	77
〈표 IV-2- 2〉 자율공부모임 심화과정 대상 및 내용 .....	78
〈표 IV-2- 3〉 재무회계 컨설팅 도움 여부 .....	80
〈표 IV-2- 4〉 재무회계 컨설팅 도움 항목 .....	80
〈표 IV-2- 5〉 재무회계 컨설팅 횟수 의견(중복응답) .....	81
〈부표 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 특이 사항 .....	93
〈부표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	94

## 그림 차례

〈그림 IV-2-1〉 자율공부모임 심화과정 진행과정 .....	78
------------------------------------	----



## 요 약

### 1. 서론

- 정부는 2011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정책을 실시함.
  -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3년까지 1,492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음.
- 본 연구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질 제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운영 기준에 대한 적정성,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실태를 분석함.
  - 공공형어린이집 재정 운영 특성을 비교 분석함.
  - 지원방식의 개선 가능성 등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발전 방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검토함.
  - 공공형어린이집 수입 규모를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하고,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점수 자료와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원장, 사후관리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과 운영의 적절성

- 제도 도입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신청 제외 조건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평가인증 기준 배점을 조정하고 점수 부여 방식을 개선함.
  - 대표자나 원장의 복수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기타 운영비 비율도 15%로

하한선을 둡.

- 교사 급여를 선정 기준 요인에 포함함.
  - 정부의 여성고용 70% 달성 목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을 반영하여 보육아동 중 맞벌이 가정 자녀 비율을 새로운 가점으로 추가함.
  - 취약보육은 종류별로 각 2점씩 최대 4개까지 기본배점으로 배정함.
- 그러나 가감점 제도로 인하여 필수 항목이 기준에 미달되는 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음.
- 부적절한 수준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존재함.
-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공공형어린이집이 6.8% 정도됨.
  - 1급 보육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2% 정도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어린이집이 15% 정도임.
  - 취약보육 실시 비율도 낮음 편임.

### 3.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과 재정

- 공공형어린이집 수입은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입에 비하여 낮고, 재정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정원 구간 내 정액 지원으로 최저 정원과 최고 정원의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 대비 비율이 20인 이하 1.8%p, 49인으로 6.6%p의 차이를 보임.
  - 정원 1인 차이로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며, 규모에 따라 국공립이나 서울형 대비 정도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음.
  - 규모에 따라 운영비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비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정원 충족률 100%에서 20인 이하는 72.7%이고 99인이 94.3%로 가장 높음.
  - 정원충족률에 따라서도 운영비 수입은 국공립 대비 비율이 차이가 남.
  -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안정된 재정구조를 갖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의 세입, 세출 구조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
- 특별활동비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총 세입이나 세출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공공형여부별로도 민간은 별 차이가 없음.
  - 기타 필요경비는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은 일반 민간에 비하여 세입 비율이

낮았으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이 일반에 비하여 비율이 오히려 높음.

- 공공형어린이집은 월세 어린이집의 세출 구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 총 세출 대비 기타 필요경비 세출 비율은 자가 어린이집이 3% 정도로 월세 어린이집 4% 이상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특별활동비는 월세 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기타 운영비 역시 월세가 전세보다 많음.
  -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는 자가일 경우 전세나 월세 어린이집보다 높음.
  - 기타 필요경비는 2013년 9월에 세출이 있다는 어린이집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세출 시 금액은 자가 23,200원, 전세 28,300원, 월세 30,000원의 순임.
- 공공형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보임
  - 그러나 건물소유형태의 차이보다는 차이가 약하게 나타남.

#### 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과 사후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서울시 운영기준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한 편임.
  - 서울형은 맞춤형서비스 1개 이상 실시, 모든 실내공간은 매일 청소 및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소독과 같은 위생관리,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안전관리 교육 참석,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 등을 요구함.
  - 선정 시 기준들은 운영 시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음.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일정 수준의 현원 유지도 필요함.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현재 자율공부모임, 맞춤형 컨설팅, 체계적 운영 지원으로 추진함.
  - 사후관리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 5. 결론 및 제언

-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이 되기 위하여서는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선정 및 운영기준과 사후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 선정기준을 강화함.

- 신청 제외 기준으로 자기자본이나 부채 비율을 포함하고,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과 빈번한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 등도 제외를 검토함.
- 선정기준 점수 배점에서 가·감점 항목은 100점 점수 체계 안에 넣어서 점수산정 체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 기준 점수도 재검토함.
- 평가인증 하한 점수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정함.
-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시 신규 신청자와 차별 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함.

□ 지원 기준을 점차 개선함.

-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간별 운영비에서 교사 수나 반당 지원으로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점차 개선함. 정원 기준의 지원도 합리성 강화를 요함.
- 운영지원금을 사용처 및 용도의 기준 제시도 검토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수준 강화와 더불어 운영기준을 강화함.

-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취약계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민간 인프라와 차별화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선정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관리함. 연차별로 자체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클린카드 사용, 1시설 1계좌 사용,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 사후관리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함.

- 재무회계와 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운영 컨설팅 이외에 보육과정 컨설팅도 비중 있게 실시함. 특별활동적정관리지침 등 정부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지도함.
- 교육 대상을 원장 이외에 교사에게까지도 확대함.
- 교육 대상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자부심 독려를 통한 자율 및 상호 컨설팅 등 자체적 질 관리도 지원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1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체 어린이집의 90%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9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대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1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도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현재 1,492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았다.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기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모든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 지역별 자율공부모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기대하는 바도 있다.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대체로 어린이집에 만족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비용과 급간식 관리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변 환경 만족도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서문희·이혜민, 2013). 그러나 재정 측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기 어렵다.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이에 따라 특별활동비도 더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행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질을 제고하고 부모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 수입, 지출 등 재정 운영 특성을 국공립, 일반 민간·가정 및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방식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2011년과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보육관계자 조사 결과 등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재정 특성을 파악하기 규모별로 모형을 설정하여 수입 규모를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과 비교하였고, 또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사후관리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의 장점,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4. 선행연구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정책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추진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하였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10년(서문희·최혜선, 2010)에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 공인 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비하여 부산 공인 어린이집의 선정 조건이 공인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반영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 이후인 2011년(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 2011)에 서울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선정 기준과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 지원 수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는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다.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개선과 사업 확대 추진 시에도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주변환경 등 어린이집 각 항목의 만족도에 대해 대부분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비용과 급간식 관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변 환경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이혜민, 2013).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 이후 학위논문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한 연구들이 여럿 발표되었다. 이를 대부분이 교사, 원장 등 보육인력의 인식이나 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인데, 전반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교사의 효능감이 비공공형 교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진, 2013; 노은아, 2013; 신호숙, 2014; 이새봄, 2013; 정혜경 2011). 김현숙(2013)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 제도의 안정성, 시범 운영 후의 불투명한 개선 범위, 감사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 경험을 느끼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윤희(2013)과 이새봄(2013)은 원장 등 보육인력들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이나 전문성과 관련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부모만족도 관련 연구로 공공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만족도가 비공공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보다 보육환경 만족도, 보육프로그램 만족도, 보육교사에 관한 만족도, 시설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유의

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박현주, 2013).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이 논의될 무렵에 그 벤치마킹 대상이던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김재환(2009)이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기준·평가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질적 향상 및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준의 체계성과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정부 평가인증과의 중복성, 공인 제도 주요 운영체계 등 기타 개선점이 요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갈현숙과 김송이(2010)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공인 과정, 프로그램 변화, 보육교사 노동조건 등은 검토한 결과,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으나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입에서 오는 문제는 여전히 것으로 평가하고 공인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지표 및 조사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의견을 파악하였다.



## II.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의 적절성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실시하지만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보육아동 중 개인이 아닌 국가, 직장, 법인, 단체, 부모협동 등이 설치 주체인 보육서비스 공급 비율은 23.6%에 불과하고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76.4%를 차지한다.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높으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처럼 개인 중심의 어린이집 공급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법의 하나로,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제3섹터 형태의 공공형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sup>1)</sup> 선행된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하여 실효성 논란은 있으나, 꾸준하게 그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 1. 공공형어린이집 개요

#### 가.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대상은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은 1,462개소이다. 이들 어린이집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규모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형어린이집은 1,46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

1) 2011년 4월 2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3%이며 가정어린이집의 2.1%, 민간어린이집의 6.5% 정도이다. 총 1,462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은 모두 82,466명이고 현원은 72,018명이다. 전체 보육 정원의 4.6%가 공공형어린이집 정원이며, 현원의 4.8%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다닌다. 총 정원 대비 충족률은 87%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이는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의 65%가 대부분 민간개인어린이집이고 일부가 법인·단체 등 기타 어린이집이다.

규모는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최다 빈도 규모는 36~49인 어린이집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였다. 정원이 124인 이상인 공공형어린이집도 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은 약 56명이었으며, 현원은 49명으로 나타났다. 124인 이상의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정원이 약 151명으로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균 교사수는 약 6명으로 전체 교사수는 8,849명이다.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이 늘어날수록 교사수도 많아지는 보편적인 양상을 나타냈다(표 II-1-1 참조).

〈표 II-1-1〉 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 현원 및 교사 수: 2014. 4월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계
시설수	506	112	184	108	110	88	91	111	35	116	1,461 <sup>주)</sup>
(비율)	(34.6)	(7.7)	(12.7)	(7.4)	(7.5)	(6.0)	(6.2)	(7.6)	(2.4)	(7.9)	(100.0)
정원											
평균	18.6	29.5	42.5	55.9	69.1	81.1	92.0	101.3	116.4	150.6	56.4
(표준편차)	(2.3)	(3.8)	(4.6)	(3.9)	(4.1)	(3.0)	(2.9)	(4.1)	(3.2)	(24.1)	(41.3)
총계	9,412	3,299	7,826	6,038	7,601	7,139	8,372	11,242	4,073	17,464	82,466
현원											
평균	15.9	25.8	36.9	48.9	61.1	71.6	80.5	88.6	99.1	132.6	49.3
(표준편차)	(3.7)	(5.7)	(8.2)	(9.3)	(8.5)	(10.4)	(11.6)	(14.1)	(17.2)	(24.4)	(37.3)
총계	8,026	2,890	6,791	5,281	6,726	6,297	7,323	9,833	3,468	15,383	72,018
보육교사수											
평균	3.1	4.1	4.8	6.1	7.2	8.0	8.9	9.4	10.5	13.6	6.1
(표준편차)	(1.0)	(1.1)	(1.3)	(1.2)	(1.4)	(1.4)	(1.5)	(2.0)	(2.2)	(2.9)	(3.5)
총계	1,553	456	887	658	797	704	808	1,046	366	1,574	8,849

주: 2013년말 1,462개소였으나 2014년 4월 자료로 1,461개소로 집계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 자료.

2) 법인의 어린이집 등이 10개소임.

2) 지역 분포

2013년 말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지정 연도는 2011년 582개소, 2012년 127개소, 2013년에 753개소로 2013년에 과반수 이상이 지정되었다.<sup>3)</sup>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공공형어린이집이 392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남 지역이 115개소로 많고, 강원도와 충남이 90개 이상이다.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이 늘어났고, 울산과 전북의 경우 2012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이 없었으나 2013년에 현재 58개소, 6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표 II-1-2 참조).<sup>4)</sup>

〈표 II-1-2〉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유형: 2011~2013

단위: 개소

시도	2011			2012			2013			계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582	402	180	127	87	40	753	467	286	1,462	956	506
부산	18	7	11	29	12	17	39	14	25	86	33	53
대구	37	32	5	12	9	8	36	28	8	85	69	16
인천	30	21	9	1	1	-	38	27	11	69	49	20
광주	18	16	2	5	2	3	43	11	32	40	29	11
대전	39	29	10	5	3	2	41	23	18	86	56	30
울산	35	26	9	-	-	-	23	16	7	58	42	16
세종	2	1	1	-	-	-	6	4	2	8	5	3
경기	147	68	79	23	20	3	222	94	128	392	182	210
강원	28	19	9	12	6	6	50	29	21	90	54	36
충북	29	25	4	-	-	-	37	32	5	66	57	9
충남	17	16	1	7	5	2	72	44	28	96	65	31
전북	38	23	15	-	-	-	31	20	11	69	43	26
전남	21	19	2	3	3	-	20	17	3	44	39	5
경북	38	37	1	8	8	-	32	32	-	78	77	1
경남	59	40	19	16	14	2	40	34	6	115	88	27
제주	26	23	3	5	3	2	49	42	7	80	68	1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3)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일부 있음.  
 4)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함.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과 대도시가 각각 26%로 유사한 수준이다. 각 지역의 어린이집 분포를 감안한다면 대도시에서 지정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중소도시에는 특히 가정 어린이집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에는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았다(표 II-1-3 참조).

〈표 II-1-3〉 지역구분 및 설립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 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계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전체	민간	가정
시설 수												
대도시	166	125	40	46	24	21	174	108	65	386	257	126
중소도시	284	169	114	36	24	11	365	208	154	685	401	279
읍·면	132	105	26	45	37	8	214	146	67	391	288	101
전체	582	399	180	127	85	40	753	462	286	1,462	946	506
비율												
대도시	28.5	31.3	22.2	36.2	28.2	52.5	23.1	23.4	22.7	26.4	27.2	24.9
중소도시	48.8	42.4	63.3	28.3	28.2	27.5	48.5	45.0	53.8	46.9	42.4	55.1
읍·면	22.7	26.3	14.4	35.4	43.5	20.0	28.4	31.6	23.4	26.7	30.4	2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다음 <표 II-1-4>는 지역규모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 그리고 교사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정원은 대도시 소재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약 59명, 중소도시 소재의 어린이집 약 51명으로 대도시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중소도시 어린이집보다 정원이 더 많은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 읍·면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약 65명으로 대도시보다도 정원이 높다.

현원의 경우에도 대도시 약 52명, 중소도시 약 45명, 읍·면지역 53명으로 정원과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정원에 미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입조건으로 정원대비 현원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 수의 경우 대도시 소재의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6.5명, 중소도시 소재의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5.6명, 읍·면지역의 경우 6.4명으로 집계되었다.

5) 서울 지역 제외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표 II-1-4〉 지역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 현원 및 교사수

단위: 명(개소)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정원	현원	교사수	
대도시	58.5(39.9)	52.1(37.6)	6.5( 3.6)	( 386)
중소도시	50.7(39.0)	45.2(36.2)	5.6( 3.3)	( 684)
읍·면	64.5(44.8)	53.0(38.2)	6.4( 3.7)	( 391)
전체	56.4(41.3)	49.1(37.3)	6.1( 3.7)	(1,461)

자료: 한국보건복지보개발원(2014).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 3) 평가인증 점수

실제로 2013년까지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4.4점으로 전체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균 점수보다 높다.<sup>6)</sup> 지정 연도별로는 점차 높아졌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95.1점으로 민간어린이집 94.0점보다 다소 높다.

〈표 II-1-5〉 연도별 시설유형별 평가인증 점수 구분

단위: %(개소), 점

구분	80~89점	90~94점	95~100점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6.8	44.0	49.2	100.0(1,462)	94.4 (3.2)
2011	17.2	38.8	44.0	100.0( 582)	93.7 (3.8)
2012	-	57.5	42.5	100.0( 127)	94.4 (2.6)
2013	-	45.7	54.3	100.0( 753)	94.9 (2.6)
민간	8.0	48.3	43.7	100.0( 946)	94.0 (3.3)
2011	19.0	39.3	41.6	100.0( 399)	93.4 (3.6)
2012	-	68.2	31.8	100.0( 85)	93.8 (2.5)
2013	-	52.4	47.6	100.0( 462)	94.5 (2.5)
가정	4.5	35.8	59.7	100.0( 506)	95.1 (3.0)
2011	12.8	37.2	50.0	100.0( 180)	94.3 (3.9)
2012	-	32.5	67.5	100.0( 40)	95.6 (2.5)
2013	-	35.3	64.7	100.0( 286)	95.6 (2.6)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그러나 2011년에 지정된 80~89점 어린이집이 6.8%이다. 선정된 연도 차이는 시설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가정어린이집은 2012년과 2013년 선정 어린이집이 2011년에 선정된 어린이집보다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은 특히 2013년 선정어린이집이 그 이전에 선정된 어린이집에 비하여 점수가 올라갔

6) 2010~2013년 2차 시행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평균 점수는 91.2점임.

다. 이는 2012년부터 참여 조건으로 평가인증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표 II-1-5 참조).

#### 4) 보육교사 1급 비율

실제 2013년 말까지 선정, 유지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2014년 4월 기준으로 보육교사 수 대비 1급 보육교사 비율은 평균 63%이다. 보육교사가 모두 1급 보육교사인 비율이 17.7%에 달하였다. 분포상으로는 50% 이상 70% 미만이 가장 많다. 그러나 1급 보육교사가 없는 곳도 2.1%로 30곳에 달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평균 비율이 다소 낮고 1급 보육교사가 없다는 비율도 3.3%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II-1-6 참조).

〈표 II-1-6〉 1급 보육교사 비율

구분	단위: %(개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없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전체	2.1	4.7	15.5	43.1	16.9	17.7	100(1,460)	63.0	23.9
2011	3.3	5.5	16.7	40.1	19.1	15.3	100( 581)	60.9	24.7
2012	1.6	5.5	12.6	43.3	18.9	18.1	100( 127)	64.4	23.1
2013	1.2	3.9	15.2	45.3	14.9	19.5	100( 752)	64.4	23.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 5) 취약보육 실시

2014년 4월 기준으로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약 37%가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며 2.8%가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방과후 보육과 24시간 보육 비율이 각각 1.5%, 0.4%이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24시간 보육은 가정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이외 취약보육은 대부분 민간개인 어린이집에서 제공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전체를 보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 실시 비율이 높다.

어린이집 전체와 비교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 방과후 통합 및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비율이 높다. 그러나 휴일과 24시간 보육은 어린이집 전체의 비율이 조금씩 높다(표 II-1-7 참조).

〈표 II-1-7〉 시설유형별 취약보육 실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전체	민간	가정
취약보육 실시 비율		43.2		
영아전담	1.4	-	-	-
장애아전담	0.4	-	-	-
장애아통합	2.0	2.8	4.1	-
방과후전담	0.3	-	-	-
방과후통합	0.6	1.5	2.3	-
시간연장형	19.9	36.9	35.0	40.7
휴일보육	0.6	0.5	0.7	-
24시간 실시	0.7	0.4	0.3	0.6
(수)	(43,749)	(1,461)	(949)	(506)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 6) 건물소유형태

실제 2013년 말까지 선정, 유지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 83.3%를 차지하며, 13.2%는 월세, 3.5%는 전세이다. 가정어린이집의 자가 비율이 90.6%로 민간개인어린이집 79.3%보다 높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자가 어린이집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2013년에 다시 2011년 수준 이하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유사하다(표 II-1-8 참조).

〈표 II-1-8〉 시설유형별 건물소유형태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전체	83.3	3.5	13.2	100.0(1,452)	79.3	3.3	17.4	100.0( 940)	90.6	4.0	5.4	100.0( 502)
2011	83.4	4.2	12.5	100.0(1,210)	79.5	3.8	16.7	100.0( 745)	91.6	5.1	3.4	100.0( 455)
2012	97.6	-	2.4	100.0( 51)	96.3	-	3.7	100.0( 31)	100.0	-	-	100.0( 20)
2013	81.0	3.6	15.4	100.0( 191)	76.0	3.5	20.6	100.0( 164)	88.7	3.9	7.4	100.0( 27)

주: 법인·단체 어린이집 등 10개소 제외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 7) 대표자와 원장

다음은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의 동일 여부를 나타낸 결과이다. 전체적인 공공형어린이집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의 약 85%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비율이 약 93%로 나타났으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 비율은 81% 정도였다. 2012년에 비하여 2013년에 지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은 오히려 낮아졌다(표 II-1-9 참조).

〈표 II-1-9〉 지정 연도별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민간		가정		계(수)
	동일	다름	동일	다름	동일	다름	
전체	84.5	15.5	80.7	19.3	93.3	6.7	100.0(1,452)
2011	79.0	21.0	74.4	25.6	90.6	9.4	100.0(1,210)
2012	86.6	13.4	87.1	12.9	90.0	10.0	100.0( 51)
2013	88.4	11.6	84.8	15.2	95.5	4.5	100.0( 19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4년 4월 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관련 의견

### 1) 참여 기본요건

2013년,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기본 요건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지난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농어촌 지역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평가인증 점수 하한선은 2012년에 90점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은 2011년 평균적 50% 이상에서 2012년부터 도시는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농어촌 지역은 50% 이상으로 변경하였다.<sup>7)</sup>

7) 운영비 지원을 정원 기준으로 하는 점과 관련 있음.



한편 2011년에는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유아 현원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2012년에는 이를 민간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만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가 2013년에는 가점으로 조정하였다(표 II-2-1 참조).

〈표 II-2-1〉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기본 조건

기준	비고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2011년 80점 이상에서 2012년 강화
지난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2011년 모두 50%에서 2012년 변경
지난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아+유아) 현원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2년 민간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만 해당)	2013년부터 가점으로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2, 2013. 7, 2014). 각 연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즉, 평가인증 점수 기준과 정원충족률 기준을 상향으로 조정하여 강화하고, 지난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유아 현원의 30% 이상 평균적 유지 항목은 2013년부터 중요도를 낮추어서 가점 항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유아 현원의 30% 이상 평균적 유지 항목은 영유아를 구분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아동수로 제도의 실적을 파악하는 성과 산출 기준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에 대하여 제도 자체가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상 기준으로 적절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11; 서문희·이혜민, 2013).

〈표 II-2-2〉 기본 신청 자격 기준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구분	적절	5점 평균	단위: %(명), 점
			(수)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	84.0	4.19	(100)
6개월간 정원 충족률 80% 이상	81.0	4.03	(100)
6개월간 정원 충족률 농어촌 지역 50% 이상	78.0	3.87	(100)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2>는 2013년 신청 기본 조건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으로, 당시 기

준인 평가인증 점수 하한 90점 및 정원 충족률 80% 및 농어촌 50% 기준에 대하여 보육관계자들의 적절하다는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다.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84%이고, 지난 6개월간 정원 충족률을 80% 이상과 농어촌 50%로 제한하는 것에 각각 81%, 7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2) 제외 대상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인가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인외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결격 사유가 있는 어린이집은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그동안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표 II-2-3 참조).

첫째, 행정처분 적용 기간이 길어졌다. 2011년 시범사업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각종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적용 기준이 1년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2년으로 늘어났다.

둘째, 어린이집 물리적 조건이 강화되었다. 놀이터<sup>8)</sup>는 2011년에는 민간개인어린이집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였고 가정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과 달리 가점을 부여하였다. 2012년에는 민간과 가정에 적용 기준에 차별을 두어 50인 시설에만 가점으로만 반영하였고, 2013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한 기준을 결격 사유로 적용하였다. 또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은 2011년에는 100점 기준 점수체계 안에 들어 있었으나 2012년부터 결격 사유로 변경하였다. 법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도 2012년에 제외 기준으로 추가되었다.

셋째, 원장과 대표자 기준이 강화되었다. 결격 사유로 2012년에는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이 추가되었다.

넷째, 2014년에는 운영기준이 강화되었다. 배점 체계로 관리하던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신청 제외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8) 실내외, 옥상, 인근놀이터 인정함.

〈표 II-2-3〉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제외 기준

제외 대상 기준	비고
-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sup>9)</sup>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2012년 적용 기간 변동
-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2012년 적용 기간 변동
- 2년 이내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2012년 적용 기간 변동
- 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2012년 신설
- 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2012년 이동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2013년 이동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2011년부터 동일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2012년 추가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	2014년 추가
-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2014년 추가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2014년 추가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2, 2013, 7, 2014). 각 연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이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결격사유는 행정처분 관련 조건,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터 등 물리적 설치 기준, 원장이나 대표자 기준, 운영 기준 등 제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적절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표 II-2-4>는 2013년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로, 비교적 당연하다고 판단되는 결격사유 항목을 제외하고 제외 자격 기준 3종에 대하여도 적절하다는 응답은 63~68% 정도이었다. 놀이터 미구비 67%,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 설치·운영하는 경우 68%, 대표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 조건으로 63%로 조사되어서 대체로 적절하다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공인어린이집인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제한 조건으로 주거겸용 어린이집, 2013년 6월 이후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9)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표 II-2-5 참조).

〈표 II-2-4〉 신청 제외 기준 적절성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구분	적절하다는 비율	단위: %(명), 점	
		5점 평균	(수)
놀이터 구비 못한 경우	67.0	3.78	(100)
원장이 다른 시설 설치·운영	68.0	3.81	(100)
대표자가 다른 시설 설치·운영	63.0	3.73	(100)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5〉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제한 기준

대상 시설
-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행정처분을 이유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공인 취소시설 포함)일로부터 1년(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2013. 6. 13. 이후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자료: 서울특별시(2014).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3) 선정기준 점수체계 및 산정 개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 구조는 100점 만점의 기본 점수와 가점 및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점수 산정 기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35점), ④ 취약보육서비스 운영(8점), ⑤ 지자체 특성화 지표(2점)이다. 2013년에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1급 비율에 비중을 높였으며, 원장 재직 경력과 취약보육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추었다. 2014년에는 이러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는 8점으로 2013년 5점에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특성화 지표는 2점으로 2013년 5점에서 하향 조정하였다.

이외에 일부 조건에 따라 총점 외에 가점과 감점이 주어진다. 즉, 100점 만점 기준 이외에 2013년에는 최대 28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5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었다. 2014년에는 각각 20점 11점으로 조정되었다(표 II-2-6 참조).

〈표 II-2-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 2014

구분	항목 및 배점
기본점수 항목 (100점)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35점) - 1급보육교사 비율 30점 - 원장 재직경력 5점 ④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8점): 2013년 5점에서 조정 ⑤ 지자체 특성화 지표(2점): 2013년 5점에서 조정
가점 항목 (최대 20점)	①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교사비율(3점) ②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근무경력 기간(1점) ③ 원장의 현 어린이집 근속기간(2점): 2013년 1점에서 조정 ④ 맞벌이 자녀 재원률 (3점): 신설 ⑤ 총 현원대비 유아현원 30% 이상 충족(3점) ⑥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3점) ⑦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최대 5점): 2013년 10점에서 조정
감점 항목 (최대 11점)	① 월 용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계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최대 8점): 2013년 10점에서 조정 ②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3점)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3. 7).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가점은 2011년 17점에서 2012년 12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3년 28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점으로 다소 줄었다. 2013년에 가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0점의 가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점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준 항목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도 공공형 기준 점수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선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의 소지가 있었다. 2014년 기준 가점 항목은 7개로 원장과 보육교사 근속, 원장 전공 및 교사 경력, 맞벌이가족 자녀 재원율, 총 현원대비 유아 비율, 대표자 및 원장 일치성, 교사 급여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점은 2011년 12점이었고, 2012년과 2013년 모두 15점이다. 2012년과 2013년의 감점 점수는 동일하지만 그 내역은 같지 않다. 2013년 감점 항목으로는 보육

료 수입 대비 월 용자 이자 상환액·임대료 합이 정도에 따라 1~10점이 감점되며,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된다. 2014년에는 감점이 총 11점으로 조정되고 내역도 달라졌다. 월 용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이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은 상한선을 두는 대신에 감점을 8점으로 조정하였고,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이 가점에서 감점으로 변경하여 포함하였으며, 보수교육 미이수는 신청 대상 제외 요건이 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참여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2013년에는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85점이 기준이었으나 2013년에 평가 항목이나 점수를 수정하면서 8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014년에는 다시 85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동점일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순위 기준을 두었는데, 1순위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낮은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이고, 2순위는 평가인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집, 3순위는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는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이다.

<표 II-2-7>은 기준 점수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을 나타낸다. 기준 점수가 2013년에는 80점으로 2011년과 2012년 85점에서 5점 낮아진 것인데, 이에 대하여 2013년 보육관계자 조사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2011년 72%보다 다소 낮아진 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에 대해서 73%가 적절하다는 반응으로, 2011년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의 세 가지만 적용되었을 때 59.6%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표 II-2-7> 선정 기준 점수와 우선순위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구분	기준 점수 적절하다는 비율	우선순위 적절성		단위: %(명) (수)
		비율	5점 평균	
2013년 조사	69.0	73.0	3.81	(100)
2011년 조사	72.0	59.6	3.54	(282)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8〉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형별 총점 평균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수)
전체 어린이집	91.12	7.83	117	80	(731)
민간 어린이집	88.51	5.52	107	80	(287)
가정 어린이집	92.81	8.60	117	80	(444)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한편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을 위하여 산정된 점수는 평균 91점이다. 최고 117점이며 최저는 기준인 80점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92.8점으로 민간어린이집 88.5점보다 다소 높으나 표준편차도 높다(표 II-2-8 참조).

#### 4) 주요 선정 기준별 내역과 적절성

기본배점, 가감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기준 항목 내용별로 연도별 구체적 변화와 2013년 기준으로 조사한 보육관계자의 적절성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평가인증 점수

2013년에는 평가인증 점수는 총 배점은 35점이고 간격은 28~35점 사이에 4단계이다. 2012년에 25~35점이던 것을 28~35점으로 점수 간격을 좁혔다. 2011년에는 평가인증 점수 배점이 80점 이상으로 하되 85점 미만은 35점을 기본으로 85점을 넘으면 모두 45점을 부여하되 90점 이상에는 5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었다. 또한 2005~2009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표 II-2-9〉 선정 점수 배점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가인증 총 배점		평가인증 점수 변별력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2013년 조사	91.0	4.39	66.0	3.75	(100)
2011년 조사	88.0	4.38	58.9	3.51	(282)

자료: 서문화이해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변경으로 선정기준의 타당성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으나 2013년에 점수의 폭을 좁힌 부분은 기본점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타당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3년 보육관계자 조사에서도 총 배점 35점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비율이 91%이고 2011년 조사에서도 88%이었다. 변별력은 2013년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66.0%로 2011년 59% 수준에 비하여 7%p가 높아졌다(표 II-2-9 참조).

<표 II-2-10>, <표 II-2-11>은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평균과 점수 분포인데 평균은 31점, 표준편차 2.3점 내외로 시설유형간에 차이가 없으며 4단계 점수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함을 나타낸다.

<표 II-2-10>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관련 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단위: %(명)
					(수)
전체 어린이집	31.12	2.36	35.00	28.00	(731)
민간 어린이집	31.60	2.32	35.00	28.00	(287)
가정 어린이집	30.81	2.34	35.00	28.00	(444)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표 II-2-11> 평가인증 관련 점수 분포

구분	28점	30점	32점	35점	단위: %(명)
					전체
비율	24.2	23.0	35.8	17.0	100.0
(수)	(182)	(173)	(269)	(128)	(75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2014년에는 최저 점수를 하향 조정하되, 점수 급간별 비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2014년 방안은 실제 점수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2013년에 비하여 합리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미비는 2012년부터 신청 대상 제외 요건으로는 적용하고 있고, 놀이터 구비는 기본점수 배점 및 가점의 대상이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 대상 제외 요건으로는 적용하고 있다.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자체 부지에 3종 이상 놀이기구가 구비된 옥외놀이터 구비 시 인정하는데 2012년까지는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으면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한 놀이터 기준을 신청 요건으로 적용하였다.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한 놀이터 기준을 신청 요건으로 적용한 2013년 기준에 대하여 보육관계자의 2/3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바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 건물소유형태

건물소유형태는 자가 전용, 자가 복합, 임대 전용, 임대 복합의 4종의 배점이 2011년 5~10점이었으나 2012년 0~20점, 2013년에 5~20점으로 조정하였다.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이용형태는 복합으로 보았다.

또한 감점으로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에서 15% 이상에 대하여 감점을 2011년 1~5점, 2012년 3~7점, 2013년 2~10점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과 2013년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총 배점의 확대 변화에 대하여 배점이나 변별력에 대한 보육관계자의 응답도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에서 15% 이상에 대하여 감점 2~10점에 대한 적절성 응답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표 II-2-12, 표 II-2-13 참조).

〈표 II-2-12〉 선정 점수 배점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건물소유형태		변별력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2013년 조사	85.0	4.27	70.0	3.94	(100)
2011년 조사	69.2	3.94	50.4	3.41	(282)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13〉 임대료·용자금 상환액 비율 감점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전체	-	4.0	12.0	43.0	41.0	100.0(100)	4.21
관련 학과 교수	-	4.6	16.9	38.5	40.0	100.0( 65)	4.14
보육 관련 전문가	-	2.9	2.9	51.4	42.9	100.0( 35)	4.34
t							-1.21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안은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은 기본 요건에 포함하고 실제 비율 감점 배점을 2~8점으로 조정하였다. 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임대전용으로 구분하고, 적용하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정하였다.

다음 <표 II-2-14>, <표 II-2-15>는 20점 만점 기준 평균과 기본배점 및 감점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기본점수와 감점을 포함한 전체점수 평균은 13점 내외인데 최저 점수가 -2점으로 부적절한 어린이집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물소유형태 감점도 10점, 즉, 극소수이지만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4> 어린이집 유형별 건물 소유 점수 평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단위: %(개소)
					(수)
전체 어린이집	13.35	5.26	20.00	-2.00	(731)
민간 어린이집	12.89	3.45	20.00	-2.00	(287)
가정 어린이집	13.64	6.13	20.00	-2.00	(444)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표 II-2-15> 건물 소유 형태 배점

구분	단위: %(개소)									
	기본배점				감점					전체
	5점	10점	15점	20점	0점	2점	3점	7점	10점	
비율	11.8	8.0	40.1	40.2	31.6	29.4	32.4	5.7	0.8	100.0
(수)	(89)	(60)	(301)	(302)	(238)	(221)	(244)	(43)	(6)	(75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2014년에는 다시 2012년과 같이 0~20점을 배정하였고, 특히 2014년에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을 공공형어린이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시 준수 사항으로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 등 기타운영비 지출 비율을 전체의 10%로 제한하고 있음을 앞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부표 1 참조).

#### 라) 보육교사 관련 기준

1급 보육교사 비율 배점을 2011년 10점에서 2012년 20점, 2013년 30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점수 분포도 2011년 2단계 6점과 10점을 2012년 3단계 8~20점으로 수정하였고 2013년부터 5단계로 0~30점으로 조정하여 격차를 세분화하였다. 2011년과 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준 강화와 더불어서 총 배점의 적절하다는 응답은 다소 증가하였고 변별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11.8% 증가하였다(표 II-2-16 참조).

〈표 II-2-16〉 1급 보육교사 비율 항목의 적정성과 변별력: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1급 교사 비율 총 배점		1급 교사 비율 변별력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2013년 조사	85.0	4.21	70.0	3.82	(100)
2011년 조사	81.9	4.21	58.2	3.60	(282)

자료: 서문화이해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또한 가점으로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은 2~3점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2011년부터 3~5점을 감하였으나 2014년에서 이를 신청 제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013년에는 담임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표 1호봉<sup>10)</sup>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주었다.<sup>11)</sup>

이 세 가지 가감점 역시 항목 자체나 배점에 대한 보육관계자들의 적절성 의견은 높은 편이다. 특히 교사 급여 관련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선정 시 가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항목 자체		배점		(수)
	적절하다는 비율	5점 평균	적절하다는 비율	5점 평균	
(가점)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82.0	4.05	85.0	4.08	(100)
(가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91.0	4.57	95.0	4.57	(100)
(감점) 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72.0	4.46	85.0	4.20	(100)

자료: 서문화이해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다음은 보육교사 전문성 35점 만점의 평균 점수와 각 세부항목별로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35점 만점과 가감점을 다 합한 평균 점수가 약 31점임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 차이는 없다. 최소는 7점으로 매우 낮다. 이는 교사 전문성이 낮은 어린이집이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표 II-2-18 참조).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만점 점수는 24점 이상이 다수이지만 13점, 즉 50%

10) 2013년 143만원임.

11) 각 교사별로 143만원이상 10점, 131-142만원 6점, 121-130만원 3점, 120만원 이하 0점으로 하여 평균 뉘(계산식: (10\*a + 6\*b + 3\*c + 0\*d)/N임).

미만(농어촌은 30% 미만)도 8% 정도 되고, 소수이지만 0점도 있다(표 II-2-19 참조). 앞에서 제시한 2014년 4월 기준으로 30여 곳에 1급 보육교사가 없다는 통계와도 맥을 같이한다.

〈표 II-2-18〉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교직원 전문성 평균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수)
전체 어린이집	30.95	5.38	40.00	7.00	(731)
민간 어린이집	30.98	4.58	39.00	9.00	(287)
가정 어린이집	30.93	5.85	40.00	7.00	(444)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4). 2014년 4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내부자료.

〈표 II-2-19〉 선정 시 1급 보육교사 비율 점수: 30점 만점

단위: %(개소)

구분	0점	13점	24점	30점	전체
비율	0.4	7.7	26.5	65.4	100.0
(수)	(3)	(58)	(199)	(492)	(75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표 II-2-20〉 교사 급여 지급 기준: 가점

단위: %(개소)

구분	1점 이하	1~2점	2~3점	3~4점	4~5점	5~6점	6~7점	7~8점	8~9점	9점 이상	계(수)
전체 어린이집	64.3	8.3	10.6	4.9	3.7	3.8	1.2	0.6	1.1	1.5	100.0(652)
민간 어린이집	77.3	5.7	10.9	2.0	2.4	0.8	-	0.4	-	0.4	100.0(247)
가정 어린이집	56.3	9.9	10.4	6.7	4.4	5.7	2.0	0.7	1.7	2.2	100.0(405)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표 II-2-21〉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감점

단위: %(개소)

구분	3년 이상 연속교사 30% 이상 가점		보수교육 미이수자 감점						전체
	0점	3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비율	53.8	46.1	78.7	13.2	4.8	2.3	0.5	0.5	100.0
(수)	(406)	(347)	(592)	(99)	(36)	(17)	(4)	(4)	(75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또한 가점으로 3년 이상 연속근무 교사 30%는 해당어린이집이 약 반 정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교적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10점을 배정한 교사 급여 수준은 64%가 1점 이하로 소수 어린이집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

다. 한편 보수교육 미이수자 감점은 역시 다수인 79% 가량이 해당사항이 없고 1점에 13.2%가 몰려 있어서 지표로서의 적절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II-2-20, 표 II-2-21 참조).

2014년의 교사 전문성 배점은 2013년과는 변동이 없고 담임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표 1호봉<sup>12)</sup> 기준을 5점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보수교육 미이수자 감점은 기본항목으로 변경된다. 적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마) 원장 및 대표자 관련 기준

원장의 재직 경력은 총 배점은 2011년과 2012년은 10점에서 2013년에 5점으로 조정되었다. 간격별 점수도 2011년에는 경력 5~10년을 3단계로 구분하였으나 2012년에 경력 7~15년을 5~10점으로 정하였고 2013년에 이를 다시 1~5점으로 조정하였다.

총 배점은 2011년 10점에서 2013년 5점으로 조정되었으나 보육관계자 의견은 배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변별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2011년에 비하여 2013년에 10%p 증가하였다(표 II-2-22 참조).

〈표 II-2-22〉 원장 재직 경력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배점		변별력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2013년 조사	70.0	3.82	60.0	3.56	(100)
2011년 조사	70.8	3.96	50.0	3.43	(282)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원장의 전문성과 관련한 가점 항목으로 학력과 경력을 두고 있다. 2011년에 석사학위 이상의 원장에게 3점, 2012년에 1점의 가점을 주었고, 2013년에는 이를 바꾸어서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보육교사 경력 3년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또한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에게 1점의 가점을 부여하였다. 2014년에는 전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후자의 경우 2점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원장과 대표자 변경 및 일치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2013년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의 가점을 부여하였다. 2014년에는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부여는 동일하지만 3년간 대표

12) 2013년 143만원임.

자 및 원장 미변경시 가점 3점은 대표자 변경시 감점 3점으로 대상을 변경하고 점수부여 방식을 바꾸었다.

<표 II-2-23>은 2013년 가감점 기준 항목 및 배점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는 높는데 그 중에서 원장 현 기관 근속 연수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항목 자체에 대한 긍정 의견은 67%이고 가점 부여 1점에 대해서는 57%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2-23> 선정 시 가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항목 자체		배점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87.0	4.27	80.0	4.11	(100)
원장 현기관 근속연수	67.0	3.76	57.0	3.62	(100)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75.0	4.10	74.0	4.01	(100)
최근 3년간 대표자, 원장 미변경	74.0	4.04	74.0	4.01	(100)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다음은 선정 평가 시 받은 점수를 나타낸다. 원장 재직 경력은 다빈도가 7~15년 미만으로 3점이 50%로 다수이고 7년 미만이 39% 정도 된다(표 II-2-24 참조).

<표 II-2-24> 원장으로서 재직 경력 분포

단위: %(개소)

구분	7년 미만(1점)	7~15년 미만(3점)	15년 이상(5점)	전체
비율	38.6	50.0	11.4	100.0
(수)	(290)	(376)	(186)	(75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표 II-2-25> 원장 및 대표자 관련 가점 받은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원장 관련학과 학사 학위 소지 및 보육경력 3년 이상 1점 가점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가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가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가점	전체
비율	25.7	24.6	73.5	84.3	100.0
(수)	(193)	(185)	(553)	(634)	(75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가점 4종에서 가점을 받은 비율을 보면, 원장 관련학과 학사 학위 소지 및 보육경력 3년 이상 1점 가점과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가점

은 각기 25% 정도가 가점을 받았고,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3점 가점은 84%,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가점은 73.5%가 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는 공공형어린이집 기본요건으로 변경 적용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2-25 참조).

2014년 선정 기준은 원장 관련학과 학사 학위 소지 및 보육경력 3년 이상 1점 가점과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일 시에 3점 가점은 그대로 존치한다. 그러나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원장 1점 가점은 2점으로 늘어나고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가점은 변경 시 감점으로 조정되었다.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시설이 소수임을 고려할 때 가점보다는 감점 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바) 취약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배점화하여 10점을 부여하고 개수에 따라서 3단계 4~10점을 부여하였다. 2013년에는 기본 점수 배점을 5점으로 축소 조정하여 1~5점을 부여하였다.

2013년 기준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으로 배점에는 88%, 변별력에는 6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II-2-26 참조).

〈표 II-2-26〉 취약보육 배점과 변별력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취약보육 총 배점		취약보육 변별력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2013년 조사	88.0	3.99	63.0	3.76	(100)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표 II-2-27〉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단위: %(개소)

구분	1점	3점	5점	계(수)
전체 어린이집	36.0	46.1	17.8	100.0(731)
민간 어린이집	51.9	39.4	8.7	100.0(287)
가정 어린이집	25.7	50.7	23.6	100.0(444)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표 II-2-27>은 2013년 5점 만점의 취약보육 점수를 나타낸다. 민간어린이집은 1점에, 가정어린이집은 3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보육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만 있어도 취약보육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 취약보육 실시 어린이집 비율은 높지 않다. 앞의 공공형어린이집 특성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4월 기준으로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37%가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며 2.8%가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방과후 보육과 24시간 보육 비율이 각각 1.5%, 0.4%이다. 어린이집 전체와 비교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 방과후 통합 및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비율이 높다. 그러나 휴일과 24시간 보육은 어린이집 전체의 비율이 0.1%p씩 높다.

2014년에는 이 점수를 8점으로 총 배점을 올리고 취약보육 개수에 따라 2점씩 부여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과 부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다소 과도한 배점이라고 생각된다.

#### 사) 특성화 지표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는 2013년 하반기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에 따르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하여 미검출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가 기본 점수로 2011~2013년 5점이 배정되었고 2014년 안에서는 2점으로 조정하였다. 특성화 지표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취약보육 점수 확대에 따라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 지표의 배점은 2011년과 2013년에 변동이 없었으나 보육관계자들의 의견은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표 II-2-28 참조).

<표 II-2-28> 취약보육 배점과 변별력이 적절하다는 비율과 5점 척도: 보육관계자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총 배점		변별력		(수)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2013년 조사	75.0	3.87	63.0	3.69	(100)
2011년 조사	58.9	3.68	49.6	3.52	(282)

자료: 서문화이해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13) 그 이유는 응답자 차이 이외에는 분명하지 않음.



그러나 점수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만점인 5점을 받고 있어서 변별력은 취약한 편이었다(표 II-2-29 참조).

〈표 II-2-29〉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기본 점수

구분	단위: %(개소)						계(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전체 어린이집	11.2	1.3	24.3	6.2	3.7	53.3	100.0(707)
민간 어린이집	12.9	1.1	29.4	3.9	2.2	50.5	100.0(279)
가정 어린이집	10.0	1.4	21.0	7.7	4.7	55.1	100.0(428)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아) 기타

이외의 선정 기준 관련 항목으로는 어린이집 정보 공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원장 및 보육교사의 수상실적,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등이 있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가 2012, 2013년에 4점의 가점이 부여되었으나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실시로 신청 요건이 되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2012년에 2점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신청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 기준으로는 원장 및 보육교사의 수상실적 기본 배점 5점과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기본 배점 5점이다.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충족은 과거 기본요건이었으나 2013년에 3점의 가점으로 변경되어 2014년에 그대로 유지한다.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충족은 항목 자체나 배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2013년에 가정 어린이집 중 이 가점을 받은 어린이집은 5%이다(표 II-2-30 참조, 표 II-2-31 참조).<sup>14)</sup>

〈표 II-2-30〉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보육관계자 의견

구분	단위: %(명), 점				(수)
	항목 자체		배점		
	적절	5점 평균	적절	5점 평균	
어린이집 정보 공개	92.0	4.47	87.0	4.32	(100)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55.0	3.57	59.0	3.59	(100)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14) 이 항목의 포함은 사업 시행 초기에 가정어린이집보다는 민간개인어린이집의 공공형 선정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 재정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지원 기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었음.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의 참여 요구와 민간어린이집의 적극성 결여로 가정어린이집도 포함함.

〈표 II-2-31〉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가점 배점

구분	단위: %(개소)		
	0점	3점	계(수)
전체 어린이집	43.5	56.5	100.0(664)
민간 어린이집	14.2	85.8	100.0(289)
가정 어린이집	95.0	5.0	100.0(375)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2014년에 가점으로 새로이 추가된 항목은 보육아동 중 맞벌이 자녀 비율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취업모 역할별 등 보육의 정체성 논란 및 여성 취업률 70% 달성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보육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정규직 등 여성 취업의 구조적 특성 상 모의 취업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의 제시와 제시된 증거의 확인 가능성 등은 과제로 남는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부가조사 결과, 전체 영아 가구 중 5.6%가 근로 증명이 어려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서문희 외, 2012).<sup>15)</sup>

### 3. 요약 및 시사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해마다 약간씩 수정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이해된다. 신청 제외 요건의 강화로 구조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운영 측면에서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였다. 운영조건으로 1기관 1카드를 명시하였다. 2014년에 평가인증 점수 반영을 계단식에서 비율로 조정하여 점수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점을 합리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원장의 전문성도 강조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맞벌이 자녀 채용 비율이 새로운 가점으로 추가되었고 취약보육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고용 70% 달성을 목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반영한 조치로, 취업 증명의

15) 영아 가구 중 맞벌이 가구 33.2%에서 근로 증명이 어려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인. 일은 하되 근로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불리는 직종은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투명성은 다소 우려되지만 원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취약보육은 유형 당 2점으로 비중 기본 배점 총 8점은 다소 높다고 생각된다(표 II-2-32 참조).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과제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소유형태에 따른 차이이다. 그 이전에도 소유 형태와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의 보육료 수입 비율을 점수로 차이를 두었고 2014년에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최대인 보육료 수입 15%가 합당한지 근거는 찾기 어렵다.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기준으로 보육료 수입의 10% 이하를 적용하는 점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공공형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버금가는 운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자본 100%의 자가 시설일 것이다.

둘째,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이다. 2012년부터 1인 1시설 원칙을 적용하였고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도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시설 동시 운영자 금지 항목은 사실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가감점 제도도 개선을 요함을 나타냈다. 특히 가점 제도로 인하여 기본 필수 항목 점수가 매우 낮아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1급 보육교사 비율 35점에서 0점을 받아도, 건물 소유형태 관련 점수에서 -2점을 받아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기준으로 판단된다.



(표 II-2-32 계속)

배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비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input type="checkbox"/> 건물 소유·이용형태	10점			20점			20점			20점			· 최저점수 하향 조정 (5점→0점) * 관리동을 임대전용으로 구분 · 부채 상환액 비율별 감점 폭 균등하게 조정 (2~3점→3점) 및 기본점수화(15% 미만) · 적용기간 조정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정)
○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20점			20점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8점			10점			15점			10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5점			10점			5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0점			5점			0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1점			3점			2점		2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3점			5점			3점		5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5점			7점			7점		8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점			10점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직원 전문성	25점			30점			35점			35점			· 현행 유지
○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20점			30점			30점			
- 70% 이상 *농어촌 50% 이상	10점			20점			30점			30점			
- 60% 이상 70% 미만 *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10점			14점			24점			24점			
- 50% 이상 60% 미만 *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6점			8점			13점			13점			
- 45% 이상 50% 미만 *농어촌 25% 이상 30% 미만(구간 신설)							5점			5점			
- 45% 미만 *농어촌 25% 미만(조정)							0점			0점			

(표 II-2-32 계속)

배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비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10점			10점			5점			5점			·현행 유지
- 15년 이상				10점			5점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7점			3점			3점			
- 7년 미만				5점			1점			1점			
- 5년 미만	5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7점												
- 10년 이상	10점												
○ 원장·보육교사의 어린이집 보육관련 표창 등 수상실적 <sup>*)</sup>	최대 5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6점			
- 최근 3년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3점			최대 5점			최대 5점				·기본 조건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3점			2점			3점			3점		·현행 유지
-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관련 석사 이상		3점			1점								·현행 유지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1점		·가점 상향 조정 (1점→2점)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1점			2점		

(표 II-2-32 계속)

배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비고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input type="checkbox"/>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10점			5점			8점			·배점 상향화 조정 및 실시 개수별 점수 세분화(2개 이상 실시 시설)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보육 중													
- 4개 실시										8점			
- 3개 실시										6점			
- 2개 실시										4점			
- 2개 이상 실시				10점			5점						
- 1개 실시				7점			3점			2점			·기본 조건
- 미실시				4점			1점			0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 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정보 공개 여부					4점			4점					
- 모두 공개					4점			4점					
- 3~4개 공개					1점			1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					2점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점			5점			5점			2점			·하향조정(5점→2점)
<input type="checkbox"/>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이상 충족								3점			3점		·현행 유지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3점			(삭제)		·대표자 변경 시 감점으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3점		·원장 삭제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3점		·현행 유지

(표 II-2-32 계속)

배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비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input type="checkbox"/>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최대 10점			5점		·배점 하향 조정 (최대 10점→5점)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5점												
- 60.00% 이상	5점												
- 50.00% 이상 60.00% 미만	4점												
- 40.00% 이상 50.00% 미만	3점												
- 35.00% 이상 40.00% 미만	2점												
- 35.00% 미만	1점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자녀 재원율											3점		·가점 신설(3점)
- 50.00% 이상(동어촌 40% 이상)											3점		
- 40.00% 이상 50.00% 미만 (동어촌 35% 이상 40% 미만)											2점		
- 30.00% 이상 40.00% 미만 (동어촌 30% 이상 35% 미만)											1점		
<b>계</b>	100점	17점	12점	100점	12점	15점	100점	28점	15점	100점	20점	11점	

주: 1) 훈포장 건당 3점, 대통령상 건당 2점, 국무총리상 건당 1.5점, 보건복지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 포함), 내무부교육부장관상(새마을유아원 주관부처 시기의 표창에 한함) 건당 1점, 시도 지사상 건당 0.5점, 시군구청장상 건당 0.3점(그 외 불인정)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매뉴얼



### Ⅲ.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과 재정

#### 1.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가. 지원 및 소요 예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정액을 차등화하여 지원하는데, 2013년 7월 이전에는 여섯 구간으로 나누었고 그 이후에는 구간을 다소 세분화하여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단가도 2013년 7월부터는 다소 달라져서 종전의 동일 구간 내에서 정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어린이집이 지원이 약간 개선되었다(표 Ⅲ-1-1 참조).<sup>16)</sup>

이외 해당 지자체의 특수 시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표 Ⅲ-1-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정원	20인 이하	단위: 만원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2013.7 부터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2013.7 이전	96	248	248	440	440	560	560	824	824	87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7).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표 Ⅲ-1-2〉 공공형어린이집 국고 지원 예산액

정원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7,984	16,942	30,049(33,049)	38,528
지원	7,984	16,542	29,549(32,519)	37,532
홍보 및 사후관리	-	400	500	996

주: 국고 지원율 40~60%임. ( )는 추경을 포함한 액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리에 소요되는 국고 지원 예산은 2014년에 총 385

16)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지원을 받음.

억 2,800만원이다.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이고, 이외에 사후관리 비용은 약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표 III-1-2 참조).

운영비 지원금의 국고 부담 비율이 40~60%로 평균 50% 정도이므로 실제 투입비용은 이 비용의 두 배인 750억원 규모가 된다.

## 나. 어린이집 수입

공공형어린이집의 수입 규모를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해진 보육지원 단가 이외에 공공형 운영비를 구간별로 추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급여의 80%,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호봉 수준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원장은 15호봉, 교사 6호봉, 취사부 3호봉을 적용하였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급여의 80%,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호봉 수준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sup>17)</sup> 원장은 1호봉, 교사 3호봉, 취사부 1호봉을 적용하였다.<sup>18)</sup>

〈표 III-1-3〉 국공립과 서울형 인건비 지원 기준 설정

구분	국공립	서울형
원장	15호봉 80%	1호봉 80%
교사	6호봉 영아 80%, 유아 30%	3호봉 영아 80%, 유아 30%
취사부	3호봉 100%	1호봉 100%

<표 III-1-4>는 어린이집 규모는 50~62인 구간을 반영하여 그 최소 규모인 50인 어린이집과 최대인 62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였다. 50인 어린이집은 0, 1, 2, 3세아 및 4세 이상아 반으로 총 5개 반 구성되며, 교직원은 원장, 영아반 교사 3인, 유아반 교사 2인, 취사부 1인을 기본으로 가정하였다. 이외에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시설별 지원이 있으나 이는 생략하고 기본 모형으로만 비교하고자 하였다. 62인 어린이집은 1세아와 2세아반이 각각 1개씩 더 있는 것으

17)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원장은 1호봉을 적용하고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1호봉 적용 이후 매년 승급분을 반영함. 이외에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신규 지정시 환경개선비 등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음(부표 2 참조).

18) 유아 현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작용하지 않았음.

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규모를 정원충족률이 100%일 경우와 80%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표 III-1-4〉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표준안: 50~62인, 정원 100%

단위: 천원, %

구분	50인			62인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보육료	12,619	12,619	12,619	16,356	16,356	16,356
누리 지원금	1,575	1,575	1,575	1,575	1,575	1,575
영아 기본보육료	2,758	-	-	4,433	-	-
인건비 지원금	-	10,349	8,622	-	13,694	11,567
운영비 지원금	4,450	-	-	4,450	-	-
기타운영비(보육료의 10%)	-	-	1,407	-	-	1,744
소계	21,402	24,543	24,223	26,814	31,652	31,242
국공립 대비 비율	87.2	100.0	98.7	84.7	100.0	98.7

먼저 정원충족률이 100%일 경우를 보면 50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입 규모의 87.2% 정도가 확보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입 규모의 99%에 근접하는 서울형과는 큰 차이가 난다. 50~62인 동일 구간의 최대 규모인 62인 어린이집은 공공형 재정규모가 국공립 대비 84.7% 수준으로 더욱 더 낮아진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별 변화가 없다(표 III-1-4 참조).

〈표 III-1-5〉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표준안: 50~62인, 정원 80%

단위: 천원, %

구분	50인			62인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보육료	10,095.2	10,095.2	10,095.2	13,084.8	13,084.8	13,084.8
누리 지원금	1,260	1,260	1,260	1,260	1,260	1,260
영아 기본보육료	2,206.4	-	-	3,546.4	-	-
인건비 지원금	-	10,349	8,622	-	13,694	11,567
운영비 지원금	4,450	-	-	4,450	-	-
기타운영비(보육료의 10%)	-	-	1,125.6	-	-	1,395.2
소계	18,011.6	21,704.2	21,102.8	22,341.2	28,038.8	27,307
국공립 대비 비율	83.0	100.0	97.2	80.0	100.0	97.4

다음으로 정원 충족률이 80% 수준일 경우에는 50인 규모에서는 총 세입이 국공립 대비 83.0% 수준이 되며, 62인은 80% 수준으로, 정원 100% 충족 시보다 각각 4.2%p, 4.7%p가 낮아진다. 이마저도 공공형어린이집에 정원 기준으로 운영

비를 지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서울형어린이집은 정원 80% 시에 100% 충족 시보다 총 수입이 1.3%p 정도로 약간 낮아지지만 운영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표 III-1-5 참조).

〈표 III-1-6〉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안

단위: 명

연령	20인 이하	21	35	36	49인	50	62	63	76	77	86	87	97	98	111	112	123	124 이상
0	1	1	1	1	1	1	1	1	0	1	1	0	1	0	1	1	1	1
1	2	1	2	1	2	1	2	1	2	2	2	2	2	3	2	3	3	3
2	1	2	1	2	3	1	2	3	2	2	3	2	2	2	4	4	5	5
3			1	1	1	1	1	1	2	2	2	3	2	2	2	2	2	3
4.5					0	1	1	1	1	1	1	1	2	2	2	2	2	2
영아	4	4	4	4	6	3	5	5	4	5	6	4	5	5	7	8	9	9
유아	0	0	1	1	1	2	2	2	3	3	3	4	4	4	4	4	4	5
소계	4	4	5	5	7	5	7	7	7	8	9	8	9	9	11	12	13	14
정원	20	22	35	37	49	50	62	64	74	77	84	89	97	99	111	116	123	138

이러한 방식으로 10여개 어린이집 규모 구간별로 동일 구간 내 최소와 최대 규모 어린이집의 반 구성을 가정하고 공공형 지원금 지원 구간의 수입 정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각 정원 규모별 반 구성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7>로 산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원을 기준으로 나눈 일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구간별로 최저와 최고 아동 규모일 경우에 구간에 따라서 수입은 국공립 대비 최소 0.3%p에서 최대 4.3%p의 차이가 난다.

둘째, 규모에 따라 국공립이나 서울형 대비 정도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 정원 충족률 100%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20인 이하가 최저로 72.7%이고 99인이 94.3%로 가장 높다. 대체로 50인 미만은 80% 미만이고 50~97인은 90% 미만이며 그 이상 규모는 90%가 넘는다.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비율이 낮다.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간담회에서도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의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셋째, 각 구간 경계에 있는 어린이집은 정원 1인의 차이로 인하여 지원금 차이가 크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소규모인 49인과 50인 정원을 비교해보면 수입의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비율이 10%p 이상이 차이가 난다.

〈표 III-1-7〉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충족률별 기본모형별 수입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정원 100%			정원 80%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20인 이하						
소계	11,442	15,748	14,735	9,385.6	12,598.4	11,788
(비율)	(72.7)	(100.0)	(93.6)	(74.5)	(100.0)	(93.6)
21~35인						
22인 소계	13,014	17,688	16,530	10,917.2	16,303.8	15,022
(비율)	(73.6)	(100.0)	(93.5)	(67.0)	(100.0)	(92.1)
35인 소계	16,787	22,023	21,156	13,935.6	19,897.2	18,834.2
(비율)	(76.2)	(100.0)	(96.1)	(70.0)	(100.0)	(94.7)
36~49인						
37인 소계	18,084	22,290	21,479	14,247.2	20,110.8	19,092.6
(비율)	(81.1)	(100.0)	(96.4)	(70.8)	(100.0)	(94.9)
49인 소계	22,551	29,373	28,499	18,576.8	26,446.4	25,295.8
(비율)	(76.8)	(100.0)	(97.0)	(70.2)	(100.0)	(95.6)
50~62인						
50인 소계	21,402	24,543	24,223	18,011.6	21,704.2	21,102.8
(비율)	(87.2)	(100.0)	(98.7)	(83.0)	(100.0)	(97.2)
62인 소계	26,814	31,652	31,242	22,341.2	28,038.8	27,307
(비율)	(84.7)	(100.0)	(98.7)	(79.7)	(100.0)	(97.4)
63~76인						
64인 소계	27,166	31,892	31,565	22,652.8	28,252.4	27,565.4
(비율)	(85.2)	(100.0)	(99.0)	(80.2)	(100.0)	(97.6)
74인 소계	28,674	33,373	33,452	23,859.2	29,228.2	28,891.8
(비율)	(85.9)	(100.0)	(100.2)	(81.6)	(100.0)	(98.8)
77~86인						
77인 소계	31,989	36,228	36,191	26,721.2	37,180.8	38,913.6
(비율)	(88.3)	(100.0)	(99.9)	(71.9)	(100.0)	(104.7)
84인 소계	34,796	39,902	39,862	28,966.8	35,120.4	34,653.6
(비율)	(87.2)	(100.0)	(99.9)	(82.5)	(100.0)	(98.7)
87~97인						
89인 소계	33,849	37,975	38,402	28,239.2	33,035.2	32,961.4
(비율)	(89.1)	(100.0)	(101.1)	(85.5)	(100.0)	(99.8)
97인 소계	37,439	42,155	42,606	31,111.2	36,713.8	36,619
(비율)	(88.8)	(100.0)	(101.1)	(84.7)	(100.0)	(99.7)
98~111인						
99인 소계	40,269	42,708	43,215	33,873.2	37,156.2	37,106.2
(비율)	(94.3)	(100.0)	(101.2)	(91.2)	(100.0)	(99.9)
111인 소계	45,543	49,504	49,948	38,092.4	43,262.0	43,081.6
(비율)	(92.0)	(100.0)	(100.9)	(88.1)	(100.0)	(99.6)
112~123인						
116인 소계	48,298	52,912	53,296	40,326.4	46,323	46,054.4
(비율)	(91.3)	(100.0)	(100.7)	(87.1)	(100.0)	(99.4)
123인 소계	51,105	56,587	56,968	42,572	49,597.6	49,286.6
(비율)	(90.3)	(100.0)	(100.7)	(85.8)	(100.0)	(99.4)

(표 III-1-7 계속)

구분	정원 100%			정원 80%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공공형	국공립	서울형
124인 이상 138인 소계 (비율)	55,390 (90.5)	61,189 (100.0)	61,917 (101.2)	46,062 (86.3)	53,404.6 (100.0)	53,356.2 (99.9)

넷째, 정원충족률에 따라 수입의 국공립 대비 비율이 차이가 난다. 구간별로 최저는 20인 이하로 1.8%p가 낮고 최고는 49인으로 6.6%p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형어린이집 세입이 정원충족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말해 준다. 정원 충족정도에 따라 운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원체계의 합리성이 낮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어 왔다.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3년 상반기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관계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7%, 구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sup>19)</sup>도 25%를 나타냈다. 보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학계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과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30.8%로 동일한 비율로 원하고 있었다(표 III-1-8 참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8〉 운영비 지원 체계 개선안: 보육관계자 의견

구분	구간 세분화	구간 지원금 상향조정	반 수에 따른 차등지원	단위: %(명)	
				기타	계(수)
전체	27.0	25.0	33.0	15.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0.8	24.6	30.8	13.8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20.0	25.7	37.1	17.1	100.0( 35)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19) 2014년에 다소 상향 조정됨.

## 2. 공공형어린이집 세입·세출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를 분석하여 국공립, 일반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세입, 세출 차이를 분석하였다

### 가. 세입 항목 구조

#### 1)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비교

##### 가) 전체 개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이 어린이집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해 보았다.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 수입 대비 평균 지원금 비율은 16% 정도로 추정된다. 총 수입 중 필요경비를 포함했을 때 총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은 14.2%였다.

〈표 III-2-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총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필요경비 등 제외		필요경비 등 포함		(수)	정원 충족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인 이하	10.7	3.0	10.2	3.0	( 320)	84.4
21~35인	18.2	3.7	16.6	3.5	( 68)	87.3
36~49인	15.7	4.1	13.8	3.6	( 148)	85.7
50~62인	20.9	6.0	18.3	5.0	( 78)	87.2
63~76인	17.8	3.8	15.4	3.3	( 88)	88.1
77~86인	18.6	3.5	16.0	3.2	( 65)	87.9
87~97인	17.8	3.6	15.5	3.4	( 81)	87.4
98~111인	22.0	4.6	18.6	3.1	( 79)	87.4
112~123인	21.6	4.9	18.3	3.7	( 30)	85.1
124인 이상	17.5	3.7	14.8	3.5	( 88)	88.3
전체	16.0	5.5	14.2	4.5	(1,045)	86.2

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 정원 구간을 기준으로 지원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어린이집 규모별로 이를 비교해봤을 때 98~111인 어린이집의 총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에 불과하였다. 어린이집 총 수

입에 필요경비 등을 포함시켰을 때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였다. 98~111인 규모의 어린이집의 총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이 18.6%로 가장 많았고,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10.2%로 가장 적었다(표 III-2-1 참조).

어린이집 유형별로 2013년 9월 기준 총 세입 대비 재무회계 (목) 기준 비율은 다음 <표 III-2-2>와 같다. 시설유형과 공공형 여부별 차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총 세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보육료 수입으로, 특히 공공형이 아닌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50%를 상회하였고 공공형은 50% 내외이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총 세입 중 보육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였다.

기타 지원금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은 기타 지원금으로 세입하기 때문이다.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총 세입 대비 기타 지원금의 비율이 20% 이상이었고 공공형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약 12%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7% 정도를 차지하였고 일반 민간은 6%, 일반 가정은 2.6% 수준이었다.

한편 특별활동비의 경우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총 세입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약 7.5% 정도가 이에 해당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은 공공형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일반이 2.4%, 공공형 1.9%로 공공형이 일반보다 낮았다.

<표 III-2-2> 어린이집 유형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민간-공공형			가정			가정-공공형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기타필요경비	3.4	4.7	2.2	6.0	6.3	3.8	5.2	5.1	3.4	2.2	3.3	0.7	2.5	3.3	1.1
특별활동비	4.7	4.1	4.4	7.6	5.8	7.1	7.5	4.8	7.3	2.4	3.1	1.6	1.9	2.0	1.5
보육료수입	42.2	9.3	42.7	57.0	10.4	57.9	50.3	8.1	50.4	54.4	10.4	55.6	49.1	7.9	49.7
기업지원금	-	-	-	-	-	-	-	-	-	-	-	-	-	-	-
인건비보조	41.1	11.7	40.1	2.6	8.6	-	2.2	5.8	0.7	2.5	6.1	-	6.5	7.1	4.6
기본보육료	0.2	2.4	-	15.5	9.9	14.7	10.2	6.4	9.5	29.7	9.3	30.6	24.8	7.3	25.7
기타지원금	7.2	8.5	7.0	5.9	5.4	5.4	21.9	9.3	21.8	2.6	4.4	0.5	11.6	5.8	10.8
자본보조금	0.2	2.6	-	-	0.7	0.0	0.1	1.4	-	-	0.7	-	-	-	-
기타 수입	1.0	3.8	-	5.5	10.3	0.2	2.6	6.9	-	6.1	11.2	0.2	3.6	7.0	0.1
계(수)	100.0(2,280)			100.0(12,663)			100.0(717)			100.0(21,523)			100.0(320)		

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은 기타지원금으로 분류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기타 필요경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비교적 높았다. 가정어린이집은 이보다 낮은 2%대이었다. 민간 공공형어린이집 5.2%로 일반 민간어린이집 6.0%에 비하여 기타 필요경비 세입 비율이 낮았으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이 2.5%로 일반 2.2%에 비하여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설명하면 영아 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

다음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체계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III-2-3, 4, 5 참조).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일반 가정어린이집보다 특별활동비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반면, 기타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많았다. 기타 지원금 수입은 가정 공공형이 12% 수준으로 일반 가정어린이집 2.6%보다 9%p가 더 많았다.

21~35인 어린이집은 기타 지원금의 세입 중 비율이 민간은 5% 미만이었으나,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은 약 20%를 차지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6~49인 정원 어린이집은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 적었으며, 기타 지원금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50~62인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은 기타 지원금이 전체 세입의 1/4 정도를 차지하였다.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세입 비율이 가장 낮았고,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 일반 민간 어린이집 순이었다. 특히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세입 중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였다.

63~76인 정원 어린이집은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지원금이 전체 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었다.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이 전체 세입의 약 58%를 차지하며, 기본 보육료는 약 12%를 차지하여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기타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가 전체 세입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2-3〉 20~62인 이하 어린이집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민간-공공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20인 이하									
기타 필요경비	1.6	2.6	0.3	2.2	3.3	0.7	2.5	3.3	1.1
특별활동비	0.5	1.0	0.0	2.4	3.1	1.6	1.9	2.0	1.5
보육료 수입	31.1	12.3	31.7	54.4	10.4	55.6	49.0	7.9	49.7
인건비 보조	53.4	20.9	58.3	2.5	6.1	0.0	6.5	7.1	4.6
기본 보육료	2.0	8.2	0.0	29.7	9.3	30.6	24.8	7.3	25.7
기타 지원금	8.4	14.8	1.6	2.6	4.4	0.5	11.6	5.8	10.8
자본 보조금	0.0	0.0	0.0	0.0	0.7	0.0	0.0	0.0	0.0
기타 수입	2.9	12.7	0.0	6.1	11.2	0.2	3.6	7.0	0.1
계(수)	100.0(65)			100.0(21,523)			100.0(320)		
21~35인									
기타 필요경비	2.3	2.7	1.3	4.5	5.6	2.3	3.8	4.0	1.7
특별활동비	2.3	2.5	1.7	5.6	5.1	4.8	4.6	3.9	3.6
보육료 수입	36.9	7.9	37.4	55.5	11.0	56.6	48.9	8.9	47.7
인건비 보조	52.7	10.7	53.9	2.9	9.4	0.0	4.3	4.7	3.0
기본 보육료	0.4	2.9	0.0	20.9	10.6	21.7	16.2	8.3	14.4
기타 지원금	4.2	7.0	2.8	4.2	4.9	3.0	19.4	8.7	20.5
자본 보조금	0.3	4.1	0.0	0.1	1.0	0.0	0.0	0.0	0.0
기타 수입	1.0	4.2	0.0	6.4	11.3	0.5	2.8	5.0	0.0
계(수)	(234)			(3,534)			(68)		
36~49인									
기타 필요경비	2.7	3.3	1.7	5.2	5.9	2.9	4.9	5.1	2.7
특별활동비	3.4	2.9	3.1	6.8	5.3	6.4	6.5	4.5	5.7
보육료 수입	39.7	8.3	40.5	56.8	10.7	57.9	49.7	8.5	50.6
인건비 보조	46.9	10.8	46.8	3.7	10.8	0.0	3.0	4.1	1.5
기본 보육료	0.1	2.2	0.0	16.4	9.5	16.6	12.3	7.1	12.3
기타 지원금	5.8	6.6	4.2	5.4	5.4	4.5	19.5	9.1	18.2
자본 보조금	0.4	3.6	0.0	0.0	0.5	0.0	0.4	3.0	0.0
기타 수입	1.1	3.3	0.0	5.8	10.7	0.3	3.7	10.6	0.0
계(수)	(397)			(3,928)			(148)		
50~62인									
기타 필요경비	3.3	3.6	2.3	6.7	6.4	5.0	5.2	5.3	2.7
특별활동비	4.2	3.6	4.0	8.4	5.8	8.0	6.7	3.4	6.8
보육료 수입	41.0	8.4	41.6	56.4	10.3	57.4	47.7	7.9	47.4
인건비 보조	43.3	10.2	42.6	2.8	8.9	0.0	2.7	3.4	1.7
기본 보육료	0.0	0.0	0.0	13.9	9.0	13.4	10.7	5.6	11.0
기타 지원금	7.2	5.0	6.9	6.3	5.2	5.8	25.3	8.1	24.5
자본 보조금	0.0	0.2	0.0	0.0	1.1	0.0	0.0	0.0	0.0
기타 수입	0.8	2.1	0.0	5.5	9.6	0.3	1.7	3.9	0.0
계(수)	(249)			(760)			(7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표 III-2-4〉 63~111인 이하 어린이집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민간-공공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63~76인									
기타 필요경비	4.3	7.9	2.6	6.8	6.4	5.2	5.3	5.7	3.1
특별활동비	5.1	3.6	4.8	8.8	5.8	8.4	7.7	5.1	7.5
보육료 수입	42.2	8.5	43.4	57.6	9.9	58.6	51.7	7.6	51.3
인건비 보조	39.7	9.6	39.4	2.2	7.4	0.0	2.2	3.3	0.0
기본 보육료	0.0	0.3	0.0	12.2	7.6	11.8	9.5	5.2	9.9
기타 지원금	7.4	5.9	7.0	7.3	5.1	7.0	21.6	7.1	21.7
자본 보조금	0.4	3.5	0.0	0.0	0.1	0.0	0.0	0.0	0.0
기타 수입	0.9	3.4	0.0	5.0	9.6	0.2	2.1	4.2	0.0
계(수)	(304)			(939)			(87)		
77~86인									
기타 필요경비	3.2	3.2	2.2	7.2	6.5	5.7	5.1	4.7	3.8
특별활동비	5.6	3.6	5.2	9.5	6.3	8.8	8.5	5.2	8.3
보육료 수입	44.9	9.8	44.7	59.0	8.8	59.5	51.0	7.7	51.6
인건비 보조	36.9	8.6	36.2	1.4	4.4	0.0	1.6	2.5	0.0
기본 보육료	0.0	0.5	0.0	11.5	6.9	10.7	8.9	4.5	8.9
기타 지원금	8.2	15.4	8.5	7.4	4.7	7.2	23.0	7.3	22.7
자본 보조금	0.1	0.7	0.0	0.0	0.6	0.0	0.0	0.0	0.0
기타 수입	1.1	3.2	0.0	3.9	7.5	0.1	1.9	4.4	0.1
계(수)	(355)			(659)			(63)		
87~97인									
기타 필요경비	3.6	3.7	2.6	7.1	6.3	5.8	4.7	4.5	3.9
특별활동비	6.0	3.9	5.7	9.7	6.5	9.4	8.1	5.0	7.9
보육료 수입	44.6	8.2	44.8	59.5	9.1	59.7	52.4	7.5	52.5
인건비 보조	36.2	7.8	37.1	1.3	4.5	0.0	2.1	3.3	0.2
기본 보육료	0.2	2.6	0.0	11.0	6.6	10.0	9.1	5.0	8.4
기타 지원금	8.1	5.5	7.7	7.5	5.0	7.3	21.1	7.1	21.2
자본 보조금	0.4	3.3	0.0	0.0	0.2	0.0	0.0	0.0	0.0
기타 수입	1.0	3.6	0.0	3.9	8.1	0.0	2.6	6.8	0.0
계(수)	(219)			(665)			(81)		
98~111인									
기타 필요경비	3.8	3.8	2.7	7.2	6.6	5.4	6.7	5.8	5.6
특별활동비	5.9	2.9	5.8	9.9	5.9	9.5	8.1	4.7	7.6
보육료 수입	44.7	7.6	45.5	58.7	9.5	59.3	48.1	6.4	48.6
인건비 보조	35.9	6.3	34.9	1.1	4.0	0.0	1.9	3.0	0.8
기본 보육료	0.3	3.7	0.0	10.7	6.9	10.0	7.6	5.5	6.9
기타 지원금	8.7	5.6	8.2	8.1	5.5	7.7	25.0	7.3	26.0
자본 보조금	0.0	0.0	0.0	0.0	0.4	0.0	0.0	0.0	0.0
기타 수입	0.7	2.5	0.0	4.4	9.3	0.1	2.5	7.2	0.1
계(수)	(185)			(658)			(7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표 III-2-5〉 112인 이상 어린이집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민간-공공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112~123인									
기타 필요경비	5.3	8.7	3.1	7.9	6.2	7.5	5.4	4.0	5.3
특별활동비	8.2	11.4	6.2	10.4	5.8	10.2	9.2	4.9	9.2
보육료 수입	44.7	10.3	46.0	58.8	7.8	58.6	50.8	9.4	51.1
인건비 보조	32.4	9.2	33.7	1.2	2.8	0.0	2.1	4.6	0.1
기본 보육료	0.0	0.0	0.0	9.8	5.8	9.7	7.0	4.3	7.0
기타 지원금	8.4	3.9	8.7	7.8	4.2	7.6	23.7	9.1	24.2
자본 보조금	0.0	1.5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수입	1.1	2.7	0.1	4.1	7.6	0.2	1.8	3.0	0.1
계(수)	(66)			(320)			(30)		
124인 이상									
기타 필요경비	4.4	4.9	3.0	9.2	7.6	8.4	6.2	5.5	4.5
특별활동비	6.6	3.3	6.6	10.6	5.7	10.6	9.6	4.4	9.9
보육료 수입	46.7	7.2	47.1	58.2	9.4	58.8	52.2	8.4	51.6
인건비 보조	32.2	7.0	32.1	0.7	2.5	0.0	0.1	13.1	0.7
기본 보육료	0.0	0.0	0.0	8.4	5.8	7.8	7.2	3.9	7.2
기타 지원금	8.7	4.2	9.0	8.1	5.1	8.1	22.2	14.5	21.0
자본 보조금	0.2	1.4	0.0	0.0	0.7	0.0	0.0	0.4	0.0
기타 수입	1.3	3.1	0.1	4.7	9.6	0.1	2.7	6.2	0.1
계(수)	(206)			(1,173)			(8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77~86인 정원의 공공형 지정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총 세입 중 23%가 기타 지원금이었다. 특별활동비의 경우 일반 민간 어린이집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달했으며, 기타 필요경비 역시 총 세입의 7%를 차지하였다.

87~97인의 어린이집 세입 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총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기본 보육료의 비율과 유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총 세입의 21%가 기타 지원금으로, 지원금 비중이 세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98~111인 구간의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으로 지정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이 총 세입의 48%를 차지하였고, 전체 세입의 1/4 정도가 기타 지원금이었다.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총 세입의 약 60%가 보육료 수입이었으며 기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를 합친 비율이 20% 이상이었다(표 III-2-4 참조).

112~123인 정원 어린이집의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가 전체 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높았으나,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낮았다. 반면 기타 지원금의 경우 다른 어린이집보다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124인 이상의 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지정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였고 보육료 수입이 50% 정도였다. 기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 민간 어린이집의 세입 비중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표 III-2-5 참조).

## 2) 공공형어린이집 특성별 비교

공공형어린이집 특성별 차이는 건물 소유형태와 원장과 대표자 동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 가) 건물 소유형태별 차이

<표 III-2-6>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여부별 세입 대비 해당되는 항목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보육료 수입, 기타 지원금, 기타 필요경비의 세 가지이다.

<표 III-2-6>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여부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F(a>b)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기타 필요경비	4.2 <sub>b</sub>	4.8	2.6	4.7 <sub>ab</sub>	4.4	3.5	5.6 <sub>a</sub>	5.4	4.9	3.98*
특별활동비	5.7	4.8	5.0	5.9	4.7	4.8	6.7	5.0	5.8	2.15
보육료 수입	50.2 <sub>a</sub>	8.1	50.4	48.3 <sub>ab</sub>	7.4	47.3	48.0 <sub>b</sub>	8.2	49.0	4.44*
인건비 보조	3.5	6.6	1.4	4.0	4.9	2.6	3.7	6.1	2.3	0.13
기본 보육료	14.9	9.7	12.6	17.2	9.2	15.1	11.6	7.7	11.3	7.68
기타 지원금	18.5 <sub>b</sub>	9.8	18.1	17.6 <sub>ab</sub>	6.6	17.8	21.5 <sub>a</sub>	8.8	21.4	5.20**
자본 보조금	0.1	1.2	0.0	0.0	0.0	0.0	0.0	0.0	0.0	0.28
기타 수입	2.9	7.0	0.0	2.2	3.7	0.1	3.0	6.9	0.0	0.18
( $\sum$ )		(893)			(38)			(114)		

\*  $p < .05$ , \*\*  $p < .01$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공공형어린이집이 자가 소유일 때 보육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다. 반면 전세와 월세일 경우 48% 정도로 자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보다 자가인 경우 보육료 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 필요경비 수입의 경우 자가일 경우 전체 세입의 4.2%, 전세는 4.7% 정도를 차지하지만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5.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비 수입은 자가와 전세 어린이집은 전체 세입의 5.7%, 5.9% 정도를 차지하지만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6.7%를 차지하였다. 월세로 운영하는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기타 지원금 수입은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세입의 1/5 이상을 차지하여, 자가와 전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18% 수준인 것과 대비하여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sup>20)</sup>

#### 나)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차이

<표 III-2-7>은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세입 대비 해당되는 항목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의 네 가지이다.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이다. 이 두 항목은 모두 공공형어린이집의 원장이 대표자와 동일하지 않을 때가 동일할 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

<표 III-2-7>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원장과 대표자 동일			원장과 대표자 다름			t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기타필요경비	4.5	4.8	2.8	5.5	5.5	3.5	-2.52 <sup>†</sup>
특별활동비	5.5	4.7	4.7	6.9	5.3	6.2	-3.56 <sup>***</sup>
보육료 수입	50.9	8.4	51.1	50.0	8.2	50.2	1.52
인건비 보조	3.4	4.8	1.2	2.8	10.0	0.9	1.36
기본 보육료	16.9	10.2	15.2	11.8	8.7	9.8	7.74 <sup>***</sup>
기타 지원금	15.7	9.8	15.3	20.1	12.3	20.6	-6.04 <sup>***</sup>
자본 보조금	0.0	0.8	0.0	0.0	0.4	0.0	0.19
기타 수입	3.1	7.2	0.0	2.9	6.6	0.0	0.44
(수)	(1226)			(226)			

\*  $p < .05$ , \*\*\*  $p < .001$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한편 기타 지원금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기본 보육료의 경우

20)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단정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각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시설 유형이나 보육 아동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세출 항목 구조

### 1)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비교

#### 가) 전체 개요

어린이집 유형별 주요 세출 항목별 비중을 통하여 세출 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세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인건비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0% 이상,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하여 총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 인건비 중의 일부인 기본급의 세출 비율도 민간이나 가정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현저하게 높았고, 가정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다.

원장 간담회에서도 가정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들의 다수가 지원금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소규모 공공형어린이집 중에는 교사 수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 아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충족률을 일부러 80%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재교구비는 국공립어린이집 3.5%, 민간 2.7%, 민간 공공형 3.4%, 가정은 모두 1.1%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공공형에 따른 차이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기타 운영비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6.0%, 6.3%보다 공공형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4.6%, 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공공형의 경우에도 0.4%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별활동비는 전체 세출 대비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4.6%, 민간 7.2%, 민간 공공형 7.4%, 가정 2.5%, 가정 공공형 1.9%로 나타났다. 즉, 민간은 국공립보다 훨씬 높았으며 민간 공공형이 민간 일반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영아 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낮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1.9%

로 일반 가정어린이집 2.5% 보다 비율이 낮았다.

기타 필요경비는 국공립어린이집 2.7%, 민간과 민간 공공형이 각각 4.3%, 3.9%이고 가정이 일반 1.8%, 공공형 2.0%이었다. 즉,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이 차이를 보였고 가정·민간어린이집은 공공형 여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필요경비 수입 비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낮으나 공공형어린이집이 2.0%로 일반 가정어린이집 1.8% 보다 오히려 총 세출 대비 비중이 높았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어린이집 유형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민간-공공형		가정		가정-공공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인건비	64.3	9.3	56.1	11.8	57.2	9.7	62.4	13.4	68.3	8.6
기본급	49.5	8.0	41.6	12.4	43.0	8.8	46.7	13.3	53.2	8.9
교재 교구비	3.5	3.7	2.7	3.4	3.4	3.5	1.1	2.4	1.1	2.3
기타 운영비	0.4	1.4	6.0	5.4	4.6	3.8	6.3	7.1	3.6	4.9
특별활동비	4.6	3.3	7.2	5.8	7.4	4.7	2.5	2.9	1.9	2.0
기타필요경비	2.7	2.9	4.3	4.9	3.9	4.0	1.8	2.8	2.0	2.4
(수)	(2,280)		(12,663)		(717)		(21,523)		(320)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나) 어린이집 규모별

다음은 규모별로 구분해서 6가지 항목의 세출 상 비율을 알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해서 말하면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는 공공형어린이집 세출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낮고 일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비율보다는 높다. 반면에 특별활동비 및 기타 운영비의 공공형어린이집 세출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높고 일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비율보다는 낮다. 즉,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이 동일 규모의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많은 거리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각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 어린이집보다 인건비, 교재교구비 세출 비율이 높고 특별활동 세출 비율은 더 낮았다.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일반보다 인건비 세출 비율이 높고 기타운영비, 특별활동비 비율은 낮았다.



〈표 III-2-9〉 유형 및 정원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76인 이하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민간 공공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20인 이하									
인건비	73.2	11.8	74.0	62.4	13.4	63.2	68.3	8.6	69.5
기본급	55.8	11.8	56.2	46.7	13.3	47.2	53.2	8.9	54.2
교재교구비	1.7	2.6	0.5	1.1	2.4	0.0	1.1	2.3	0.0
기타 운영비	1.0	4.2	0.0	6.3	7.1	6.0	3.6	4.9	2.9
특별활동비	0.7	1.8	0.0	2.5	2.9	1.9	1.9	2.0	1.7
기타필요경비	1.2	1.9	0.0	1.8	2.8	0.4	2.0	2.4	1.1
(수)		(65)		(21,523)			(320)		
21~35인									
인건비	70.6	7.7	70.7	59.6	11.5	59.9	64.3	8.9	65.5
기본급	54.4	7.3	54.8	45.2	10.8	45.4	49.7	8.3	50.4
교재교구비	2.0	2.9	0.9	1.7	3.0	0.4	2.1	3.9	0.7
기타 운영비	0.2	0.8	0.0	6.4	5.5	5.8	3.6	3.0	3.5
특별활동비	2.4	2.3	1.9	5.3	4.9	4.6	4.0	3.9	3.1
기타필요경비	2.0	2.6	1.2	3.3	4.2	1.5	3.3	3.8	1.6
(수)		(234)		(3,534)			(68)		
36~49인									
인건비	67.5	9.7	68.3	57.8	11.8	57.9	60.0	10.4	59.9
기본급	51.7	8.4	52.2	43.0	15.1	43.0	46.2	9.1	47.2
교재교구비	2.7	3.3	1.6	2.3	3.1	1.1	2.9	3.3	1.8
기타 운영비	0.3	1.0	0.0	5.9	5.1	5.6	3.7	3.5	3.1
특별활동비	3.5	2.9	3.2	6.4	5.3	5.8	6.5	4.4	5.9
기타필요경비	2.3	2.8	1.3	3.7	4.6	1.9	3.0	3.0	2.1
(수)		(397)		(3,928)			(148)		
50~62인									
인건비	65.7	7.7	65.7	55.3	11.8	54.8	59.0	8.7	59.0
기본급	50.1	7.2	50.3	41.4	10.9	40.6	44.3	7.8	44.0
교재교구비	3.4	3.3	2.5	3.0	3.8	1.8	3.4	4.0	2.1
기타 운영비	0.5	1.4	0.0	5.5	8.1	5.5	4.1	3.5	3.1
특별활동비	4.4	3.6	4.2	8.0	5.9	7.4	6.2	4.2	6.4
기타필요경비	2.7	2.9	1.7	4.6	5.0	3.0	4.2	4.5	3.3
(수)		(249)		(760)			(74)		
63~76인									
인건비	62.3	10.0	63.2	54.3	10.7	53.7	56.3	8.2	56.0
기본급	47.9	8.3	48.4	40.0	9.6	39.7	42.1	7.4	40.8
교재교구비	4.0	4.6	3.0	3.2	3.4	2.4	2.7	2.8	2.1
기타 운영비	0.5	1.3	0.0	5.7	5.0	5.7	4.4	3.0	4.6
특별활동비	4.8	2.9	5.0	8.3	5.8	7.9	7.9	4.8	7.6
기타필요경비	2.9	2.8	2.2	4.8	5.2	3.2	4.1	4.2	2.8
(수)		(304)		(939)			(8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표 III-2-10〉 유형 및 정원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77인 이상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민간 공공형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77~86인									
인건비	61.4	8.2	62.2	53.1	10.4	53.1	54.8	9.5	55.2
기본급	46.5	6.8	47.0	38.9	9.4	38.6	41.5	8.8	42.2
교재교구비	4.2	4.4	3.5	3.6	3.8	2.6	3.9	3.3	3.3
기타 운영비	0.5	1.4	0.0	6.0	4.9	6.0	5.2	4.2	5.5
특별활동비	5.5	3.0	5.4	9.2	6.6	8.6	8.4	4.8	8.0
기타필요경비	2.9	2.9	2.3	5.0	5.2	3.5	3.5	4.0	2.5
(수)	(355)			(659)			(63)		
87~97인									
인건비	62.1	7.4	62.0	52.5	10.9	51.7	55.7	8.8	54.8
기본급	48.5	6.6	48.6	38.3	9.8	37.4	40.8	8.5	40.7
교재교구비	4.4	3.3	4.1	3.6	3.6	2.9	3.8	3.7	3.1
기타 운영비	0.5	1.3	0.0	5.6	5.0	5.8	5.2	4.5	5.4
특별활동비	5.8	3.7	5.2	9.1	6.2	8.8	8.7	5.1	8.4
기타필요경비	2.9	2.9	2.2	5.2	5.3	3.8	3.7	3.8	2.3
(수)	(219)			(665)			(81)		
98~111인									
인건비	62.2	6.9	62.4	52.3	10.3	51.8	55.0	9.1	56.0
기본급	48.3	5.8	48.7	37.5	9.4	37.1	40.5	7.9	41.1
교재교구비	4.3	3.5	3.4	3.8	3.8	2.9	4.0	3.4	3.5
기타 운영비	0.5	1.4	0.0	5.8	4.4	5.7	5.0	3.2	4.8
특별활동비	5.7	2.8	5.7	9.4	5.9	8.8	7.6	4.6	7.2
기타필요경비	3.1	3.1	2.3	5.2	5.1	3.8	4.9	4.7	3.8
(수)	(185)			(658)			(79)		
112~123인									
인건비	58.8	12.2	61.4	51.2	9.2	50.5	53.4	8.8	53.7
기본급	46.4	10.1	47.6	36.2	8.7	36.2	39.3	8.0	38.2
교재교구비	3.3	2.9	2.6	3.8	3.5	3.3	4.7	4.3	4.6
기타 운영비	0.3	0.9	0.0	5.9	4.1	6.2	5.2	3.2	5.3
특별활동비	6.2	3.0	6.0	9.8	5.8	9.3	9.0	3.6	9.6
기타필요경비	3.7	3.7	2.7	5.4	4.8	4.5	4.5	4.4	3.2
(수)	(66)			(320)			(30)		
124인 이상									
인건비	60.8	6.6	61.0	49.0	10.3	48.4	52.4	8.7	51.9
기본급	47.5	6.1	47.5	34.9	9.2	34.1	38.7	7.4	38.8
교재교구비	3.7	3.1	3.0	4.1	3.6	3.5	4.3	2.9	3.8
기타 운영비	0.3	0.9	0.0	6.0	4.9	6.2	5.9	4.6	5.3
특별활동비	6.5	3.2	6.6	10.1	6.0	9.8	8.9	4.5	9.1
기타필요경비	3.2	3.0	2.7	6.7	6.2	5.2	4.9	4.3	3.6
(수)	(206)			(1,173)			(8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21~35인 정원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보다 인건비가 가장 높았다. 공공형으로 지정받은 민간어린이집 역시 인건비를 세출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가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 공공형으로 지정받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만큼 교재교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49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건비가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앞서 살펴본 20인 이하, 21~35인 어린이집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 비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비교적 높았으며, 공공형으로 지정받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비로 세출에서 비교적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50~62인 정원의 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지정받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 인건비에 세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기타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재교구비의 경우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세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역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비용을 세출에서 사용하였다.

63~76인 정원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운영비가 전체 세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비교적 많았다. 또한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역시 전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세출 중 평균 10%에 가깝게 특별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보다 교재교구비가 세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III-2-9 참조).

77~86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운영비,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비율이 일반 가정,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보다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었다.

87~97인 정원의 어린이집, 98~111인 어린이집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의 경우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123인 정원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인건비와 기본급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세출에서 기타운영비 비중이 높았다. 또한 특별활동비 역시 평균 10.1%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재 교구비에 세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된 민간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124인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출의 약 61%를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의 경우 평균 약 48%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운영비에 비교적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고,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특히 교재교구비가 세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III-2-10 참조).

## 2) 공공형어린이집 특성별 비교

### 가) 공공형어린이집 소유형태별

<표 III-2-11>은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주택 소유여부별 세출 대비 해당되는 항목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기타 필요경비는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 전체 세출의 3.2%, 전세는 3.6% 정도를 차지했으나, 월세로 운영하는 경우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특별활동비는 월세인 어린이집에서 6.3%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기타 운영비 역시 월세 4.6%로 전세 3.8%. 자가 4.3%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전세나 자가보다 월세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더 많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기타 운영비는 전세가 자가보다 낮아서 자가일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나타났다.

<표 III-2-11>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여부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자가			전세			월세			F (a>b)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인건비	60.6	10.8	60.9	63.1	9.4	62.1	59.7	10.5	58.5	1.512
기본급	46.1	10.2	46.1	47.3	7.9	47.6	46.3	9.4	46.2	0.305
교재교구비	2.7	3.4	1.7	2.1	2.5	1.5	2.4	2.8	1.2	1.100
기타운영비	4.3	4.3	3.8	3.8	3.1	3.3	4.6	3.1	4.4	0.634
특별활동비	5.6	4.8	4.8	5.3	5.2	3.7	6.3	4.7	5.7	1.325
기타필요경비	3.2 <sub>b</sub>	3.6	2.2	3.6 <sub>ab</sub>	3.6	2.6	4.2 <sub>a</sub>	4.7	2.5	3.857*
(수)	(893)			(38)			(114)			

\*  $p < .05$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한편, 인건비는 자가일 경우 전체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로 나타났

다. 전세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높은 63%을 나타냈으며, 월세의 경우 60% 미만이었다. 교재교구비 역시 자가일 때가 전세나 월세 어린이집 보다 높았다.

나)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표 III-2-12>는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의 동일 여부별 세출 대비 해당 되는 항목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인건비, 기본급, 기타 운영비는 원장과 대표자의 동일인일 경우,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는 원장과 대표자의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건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60.4%, 58.6%이고, 기본급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46%,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약 44%를 차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운영비도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보다 0.5%p가 높다.

특별활동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차지한 비율이 7%로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약 5.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타 필요경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약간 높았다. 교재 교구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약 2.3%를 보였으며 동일하지 않은 경우 3.3% 이상으로 그 반대로 나타났다.

<표 III-2-12>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총 세출 대비 항목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원장과 대표자 동일			원장과 대표자 다름			t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인건비	60.4	10.9	60.6	58.6	9.8	58.9	2.46*
기본급	46.0	10.3	46.0	43.7	8.6	43.7	3.61***
교재교구비	2.3	3.1	1.1	3.3	3.7	2.1	-3.56***
기타운영비	4.5	3.6	4.2	4.0	3.6	3.6	2.03*
특별활동비	5.4	4.8	4.4	7.0	5.3	6.0	-4.19***
기타필요경비	3.5	3.8	2.4	3.8	4.1	2.3	-0.71
(수)	(1,226)			(226)			

\*  $p < .05$ , \*\*\*  $p < .001$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다. 항목별 세출 비율 및 1인당 규모

### 1) 국공립 및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비교

#### 가) 전체 개요

다음은 5개 항목에 대하여 한 달간 세출이 있었다는 비율과 세출시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한 세출 금액을 산출하였다.<sup>21)</sup>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한 달간 특정 항목의 세출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출이 있다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비용은 산출하였다.

<표 III-2-13>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산출한 자료이다. 먼저 급간식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1,500원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 43,000원 내외보다 훨씬 많고 가정어린이집 52,000원보다는 다소 낮다. 공공형과 일반 어린이집의 차이는 민간은 일반이 500원 정도, 가정은 공공형이 일반 가정 어린이집보다 1,700원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재교구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3,500원 수준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일반이 18,000원, 공공형 20,400원이고 가정은 일반 14,500원, 공공형 17,800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민간과 가정은 공공형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다소 많으나 국공립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3년 9월 한 달간 교재교구비를 지출했다는 비율은 여전히 국공립이 높고, 민간은 공공형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높으나 가정은 공공형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낮다.

기타운영비는 한 달간 지출했다는 비율은 국공립이 17.3%, 민간은 일반과 공공형이 각각 81%, 86%이고 가정은 일반과 공공형어린이집이 각각 80%, 70% 수준이다. 지출 비율은 민간은 공공형이 다소 높고 가정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이 10%p가 높다. 세출 시 아동 1인당 비용은 국공립에 비하여 가정과 민간이 월등하게 높고 공공형보다는 일반 어린이집이 높다.

특별활동비는 한 달간 지출했다는 비율은 민간 공공형이 92%로 가장 높고 국공립이 87%, 일반 민간 85%이며 가정은 일반과 공공형이 각각 58%, 61% 정도이다. 세출시 아동 1인당 비용은 국공립이 3만원 수준, 민간이 4만원대, 가정이 2만원대인데, 가정과 민간은 일반 어린이집이 공공형보다 다소 금액이 높다. 차이는 민간은 약 1,800원, 가정은 3,300원 정도이다. 즉,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21) 인건비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따라서 아동 1인당 세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였음.

어린이집보다 세출 비율은 높으나 아동 1인당 비용은 낮다.

〈표 III-2-1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항목별 지출 규모

단위: %, 원(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기타운영비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b>국공립</b>					
지출비율	99.4	87.5	17.3	87.1	81.4
1인당 평균	51,511	23,497	14,258	30,168	19,640
표준편차	20,606	24,731	12,915	16,906	18,246
(수)	(2,266)	(1,993)	(393)	(1,981)	(1,851)
<b>민간</b>					
지출비율	99.8	72.5	80.7	84.8	73.2
1인당 평균	43,347	18,029	39,325	42,100	29,212
표준편차	13,551	17,731	43,326	27,791	25,193
(수)	(12,633)	(9,167)	(10,176)	(10,735)	(9,261)
<b>민간-공공형</b>					
지출비율	100	83.0	85.5	91.6	82.3
1인당 평균	42,852	20,430	27,517	40,295	24,847
표준편차	9,821	17,430	17,830	21,321	21,437
(수)	(717)	(595)	(611)	(657)	(590)
<b>가정</b>					
지출비율	99.9	50.3	79.7	58.0	52.9
1인당 평균	52,268	14,458	49,983	25,979	21,063
표준편차	20,331	21,482	44,535	16,376	19,241
(수)	(21,493)	(10,815)	(17,101)	(12,482)	(11,381)
<b>가정-공공형</b>					
지출비율	100	48.0	69.7	60.6	65.3
1인당 평균	53,985	17,755	42,020	22,680	21,661
표준편차	14,699	23,381	101,023	12,061	17,760
(수)	(320)	(153)	(223)	(194)	(20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기타필요경비는 2013년 9월 한달간 지출이 있었다는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이 81%, 일반 민간 73%, 공공형 민간 82%이고 가정은 일반이 53%, 공공형 65%이다. 세출시 아동 1인당 비용은 국공립과 가정이 2만원 내외이고 민간이 그보다 높은데, 공공형 여부에 따른 차이는 민간의 경우에만 일반이 다소 높았고 가정은 별 차이가 없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이라도 각각 82%, 65%의 시설에서 각각 평균 25,000원, 21,000원 이상의 비용이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 나) 어린이집 정원 규모별

다음은 5개 항목의 세출 비율과 세출시 아동 1인당 비용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기준 정원 구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급간식비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항목인데, 전 정원 구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높다. 그러나 공공형 여부별 차이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방향이나 정도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2-14 참조).

〈표 III-2-14〉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급간식비

단위: %, 원(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공공형/민간-공공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20인 이하	89.2	58,530	44,297	( 58)	99.9	52,268	20,331	(21,493)	100.0	53,985	14,699	(320)
21~35인	99.6	56,970	14,843	(233)	99.7	46,082	15,849	( 3,524)	100.0	48,811	9,767	( 68)
36~49인	99.7	53,452	28,200	(396)	99.7	44,048	13,130	( 3,916)	100.0	43,527	10,279	(148)
50~62인	100.0	49,167	15,709	(249)	100.0	42,551	11,639	( 760)	100.0	44,426	10,084	( 74)
63~76인	99.0	51,341	15,125	(301)	99.8	42,111	11,816	( 937)	100.0	41,683	9,241	( 87)
77~86인	100.0	49,673	12,700	(355)	100.0	40,597	11,794	( 659)	100.0	41,855	9,346	( 63)
87~97인	100.0	49,841	13,687	(219)	99.7	39,743	10,646	( 663)	100.0	41,998	10,169	( 81)
98~111인	100.0	47,956	14,369	(185)	99.7	39,723	11,521	( 656)	100.0	43,875	9,373	( 79)
112~123인	97.0	50,117	14,724	( 64)	100.0	40,491	11,455	( 320)	100.0	39,832	9,107	( 30)
124인 이상	100.0	51,279	30,308	(206)	99.9	40,727	11,615	( 1,172)	100.0	38,507	7,247	( 8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표 III-2-15〉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단위: %, 원(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공공형/민간-공공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20인 이하	61.5	21,719	29,875	( 40)	50.3	14,458	21,482	(10,815)	48.0	17,755	23,381	(153)
21~35인	73.4	22,899	26,070	(171)	59.9	15,666	19,748	( 2,114)	63.2	19,222	26,698	( 43)
36~49인	82.3	22,854	28,636	(326)	70.2	16,967	16,757	( 2,753)	79.1	19,415	18,757	(117)
50~62인	87.5	24,012	20,814	(217)	77.0	18,640	18,151	( 583)	85.1	20,176	18,618	( 63)
63~76인	85.9	26,616	35,221	(261)	79.7	18,763	15,960	( 748)	73.6	18,003	13,384	( 64)
77~86인	95.8	23,381	22,781	(340)	82.9	19,884	18,370	( 546)	88.9	21,434	14,192	( 56)
87~97인	94.5	25,352	18,123	(207)	83.5	19,565	16,263	( 555)	88.9	19,896	15,824	( 72)
98~111인	93.5	24,394	19,552	(173)	84.5	20,491	16,858	( 556)	92.4	21,942	17,379	( 73)
112~123인	90.9	19,071	16,081	( 60)	87.5	19,798	16,007	( 280)	83.3	27,820	21,225	( 25)
124인 이상	96.1	19,574	16,375	(198)	87.1	21,355	17,356	( 1,020)	94.3	20,784	12,832	( 82)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교재교구비는 2013년 9월에 세출이 있었다는 비율은 국공립이 민간이나 가정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공공여부별 차이는 규모별로 일관성이 약해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세출시 1인당 비용은 정원 구분 111인 이하에서는 대체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의 순으로 세출 시 아동 1인당 비용이 높고 112인 이상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공공형 여부별 차이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방향이나 정도 차가 분명하지 않았다(표 III-2-15 참조).

특별활동비는 2013년 9월에 세출이 있었다는 비율은 50인 미만 시설은 가정이나 민관이 국공립보다 높은 경향이고 그 이상 규모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국공립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세출시 1인당 특별활동 비용은 20인 이하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반 민간, 공공형 민간, 국공립의 순이었다.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국공립에서 세출한다는 비율은 29.5%로 매우 낮으나 비용은 3만원이 넘어 가장 많았다(표 III-2-16 참조).

〈표 III-2-16〉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단위: %, 원(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공공형/민간-공공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20인 이하	29.5	31,318	49,529	( 18)	58.0	26,107	16,681	(12,848)	60.6	22,680	12,061	(194)
21~35인	74.4	24,353	14,862	(174)	78.6	36,710	24,987	( 2,775)	77.9	29,902	20,320	( 53)
36~49인	80.4	27,681	16,173	(319)	82.9	39,814	27,629	( 3,252)	91.9	37,314	19,560	(136)
50~62인	88.0	29,158	20,335	(219)	87.6	45,245	27,597	( 666)	86.5	37,284	19,064	( 64)
63~76인	88.4	30,052	12,994	(268)	89.6	44,450	26,822	( 841)	90.8	43,456	23,640	( 79)
77~86인	95.8	30,628	14,372	(340)	91.5	48,045	37,060	( 603)	96.8	43,442	23,752	( 61)
87~97인	95.4	33,257	21,944	(209)	88.9	47,053	29,217	( 591)	95.1	44,068	21,906	( 77)
98~111인	94.1	31,680	12,462	(174)	92.2	46,675	26,227	( 607)	93.7	40,970	22,141	( 74)
112~123인	93.9	33,343	13,067	( 62)	93.4	47,545	24,808	( 299)	100.0	42,633	16,426	( 30)
124인 이상	96.1	34,080	15,266	(198)	93.3	48,945	27,284	( 1,094)	95.4	43,870	20,184	( 8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기타필요경비는 세출이 있었다는 비율은 50인 미만 시설은 공공형이 일반 가정이나 민간보다 높았고 50~76인에서는 일반이 높다가 다시 77인 이상은 공공형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국공립의 비율도 대체로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았다. 한편 지출시 비용 수준은 20인 이하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이 민간보다 낮았다. 공공형여부별로는 20인 이하를 제외하고는 일반 어린이집이 공공형보다

높은 경향이었다(표 III-2-17 참조).

〈표 III-2-17〉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필요경비 지출

단위: %, 원(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공공형/민간-공공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20인 이하	45.9	25,612	20,111	( 28)	52.9	21,063	19,241	(11,381)	65.3	21,661	17,760	(209)
21~35인	74.4	21,183	20,155	(174)	66.0	26,932	22,784	( 2,332)	76.5	25,939	23,013	( 52)
36~49인	73.0	21,830	24,706	(290)	69.9	27,666	25,656	( 2,743)	81.1	20,228	16,347	(120)
50~62인	77.9	20,661	17,675	(194)	77.5	30,056	25,941	( 589)	75.7	29,808	25,046	( 56)
63~76인	87.5	18,804	15,977	(265)	78.4	29,537	24,675	( 736)	78.2	26,873	21,886	( 68)
77~86인	85.1	18,423	16,042	(302)	80.1	29,980	24,833	( 528)	82.5	21,827	20,138	( 52)
87~97인	89.0	17,773	16,182	(195)	80.2	30,083	26,014	( 533)	82.7	22,656	19,813	( 67)
98~111인	88.1	18,574	16,075	(163)	79.0	30,792	24,268	( 520)	88.6	28,645	24,892	( 70)
112~123인	87.9	20,630	18,059	( 58)	83.4	30,170	22,122	( 267)	90.0	24,383	20,149	( 27)
124인 이상	88.3	18,545	14,327	(182)	85.6	36,188	28,683	( 1,004)	89.7	26,546	22,523	( 78)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표 III-2-18〉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운영비

단위: %, 원(개소)

구분	국공립				가정/민간				가정-공공형/민간-공공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20인 이하	18.0	31,317	29,339	(11)	79.7	49,983	44,535	(17,101)	69.7	42,020	101,023	(223)
21~35인	13.7	15,254	14,408	(32)	80.4	45,746	38,758	( 2,835)	76.5	28,990	16,060	( 52)
36~49인	14.9	15,227	12,264	(59)	79.7	40,647	61,452	( 3,118)	75.7	26,129	16,957	(112)
50~62인	17.3	17,987	12,810	(43)	80.6	36,304	26,625	( 609)	83.8	25,397	17,281	( 62)
63~76인	18.8	13,883	12,694	(57)	79.5	34,849	23,526	( 743)	87.4	25,274	13,373	( 76)
77~86인	19.4	13,704	11,124	(69)	80.8	35,216	23,066	( 531)	90.3	29,138	20,043	( 56)
87~97인	21.0	12,076	9,759	(46)	81.1	32,375	21,448	( 536)	92.5	28,343	21,128	( 74)
98~111인	19.5	13,179	11,268	(36)	83.5	32,452	19,343	( 548)	89.9	27,744	15,152	( 71)
112~123인	12.1	10,613	9,778	( 8)	83.4	32,353	16,986	( 267)	83.3	30,454	13,205	( 25)
124인 이상	15.6	7,723	8,509	(32)	84.2	33,537	34,570	( 979)	95.4	29,199	22,261	( 8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한편, 기타 운영비는 지출한다는 비율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월등하게 높고 공공형여부에 따라서는 소규모 시설은 일반 어린이집이 높고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공공형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세출 시 금액은 전 규모에서 공공형보다 일반 가정·민간어린이집이 높았다(표 III-2-18 참조).

## 2) 공공형어린이집 특성별 비교

### 가) 공공형어린이집 소유형태별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주택 소유여부별로 2013년 9월 한달간 항목별 세출이 있었다는 비율과 세출 시 월 금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기타 필요경비 하나이다. 기타 필요경비는 세출이 있다는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지출 시 금액은 자가가 23,200원, 전세 28,300원, 월세 30,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기타 운영비 등이다. 특별활동비는 지출 비율도 월세가 86.8%로 다른 유형보다 현저하게 높고, 지출시 금액은 자가 35,768원에 비하여 전세와 월세가 38,000원대로 비교적 높다. 교재교구비는 반대로 자가가 세출이 있다는 비율도 높고 세출 시 금액도 20,000원 수준으로 임대 시설에 비하여 높다. 기타운영비는 지출비율이 월세, 자가, 전세 순이고 지출시 금액은 자가 31,700원, 전세 28,800원, 월세 29,300원으로 자가가 오히려 높다(표 III-2-19 참조).

이와 같은 소유형태별 특성은 자기 건물 어린이집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전세보다 건물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큼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린이집 건물이 자가인지 임대인지 같은 단순한 건물의 소유형태보다는 자가라도 부채 비율이나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임대료와 같이 동일한 부담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III-2-19〉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금액

단위: %, 원(명)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F (a>b)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n)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n)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n)	
급간식비	100.0	46,105	12,482	(893)	100.0	48,119	15,618	(38)	100.0	46,950	12,559	(114)	0.65
교재교구비	73.2	20,013	19,355	(653)	65.8	18,099	13,165	(25)	67.5	18,997	15,376	( 77)	0.21
특별활동비	82.0	35,768	20,786	(732)	73.7	38,965	23,503	(28)	86.8	38,742	20,900	( 99)	1.13
기타필요경비	77.2	23,201 <sub>b</sub>	19,649	(689)	76.3	28,312 <sub>b</sub>	20,677	(29)	78.1	29,992 <sub>a</sub>	26,846	( 89)	4.90**
기타운영비	80.0	31,678	58,842	(713)	78.9	28,788	18,134	(30)	85.1	29,289	14,485	( 97)	0.12

\*\*  $p < .01$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나)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 동일 여부별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별 세출 시 아동 1인당 금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 기타운영비이다.

급간식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가 약 47,000원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약 44,100원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재교구비와 특별활동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동일한 경우보다 지출한다는 비율도 높고 지출시 아동 1인당 금액도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재교구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77.9%가 월 21,486원, 동일한 경우에는 69.6%가 월 18,225원을 지출하고, 특별활동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87.2%가 월 40,315원, 동일한 경우 80.9%가 월 35,67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타운영비는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가 83.2%가 지출하고 지출시 금액은 1인당 약 31,000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76.5%가 지출하며 1인당 금액은 약 2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표 III-2-20 참조).

〈표 III-2-20〉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금액  
단위: %, 원(개소)

구분	원장과 대표자 동일				원장과 대표자 다름				t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N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N	
급간식비	100.0	46,672	12,301	(1,226)	100.0	44,103	11,676	(226)	2.91**
교재교구비	69.6	18,225	17,264	( 853)	77.9	21,486	20,722	(176)	-2.20*
특별활동비	80.9	35,678	21,077	( 992)	87.2	40,315	23,674	(197)	-2.76**
기타필요경비	78.1	25,409	20,819	( 958)	77.9	25,498	22,070	(176)	-.05
기타운영비	83.2	30,849	19,171	(1,018)	76.5	27,452	18,884	(173)	2.16*

\*  $p < .05$ , \*\*  $p < .01$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2013년 9월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3. 요약 및 시사점

공공형어린이집 수입 실태와 2013년 9월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형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정 안정성은 점차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방식은 전반적으로 국공립에 비하여 지원 수준은 낮고 지원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정원을 기준으로 나눈 일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규모의 정액 지원은 구간별로 최저와 최고 아동 규모일 경우에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정원 1인 차이로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며, 규모에 따라 국공립이나 서울형 대비 정도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 정원 충족률 100%에서 기본적인 수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면 20인 이하가 최저로 72.7%이고 99인이 94.3%이다. 정원충족률이 80%로 낮아지면 구간별로 최저는 20인 이하로 2.8%p, 최고는 49인으로 6.8%p가 낮아졌다.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은 세입이 어린이집 규모나 정원충족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어서 앞으로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별활동비의 경우 가정과 민간 모두 공공형이 일반보다 1인당 액수가 적었다. 기타 필요경비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이 일반보다 1인당 액수가 적었다. 그러나 특별활동이나 기타 경비 세출이 있다는 비율은 공공형이 일반에 비하여 오히려 높게 나타나서 다소 일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은 건물소유형태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보여서 자기자본을 공공형어린이집 요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분석에서 대체로 월세인 어린이집의 세입, 세출 구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입 구조는 보육료 수입, 기타 지원금, 기타 필요경비의 세 가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육료 수입은 자가 소유일 때가 전세와 월세일 경우보다 높고,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는 반대로 자가일 경우 월세보다 비율이 낮았다. 한편 기타 지원금의 경우 월세 어린이집이 자가와 전세 어린이집보다 높았다. 세출에서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가와 전세 어린이집이 세출의 3%대인데 월세로 운영하는 경우 4% 이상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별활동비도 월세인 어린이집에서 가장 높게 산출되었고 기타 운영비 역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았다. 이외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는 자가일 경우 전세나 월세 어린이집보다 높았다.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해 본 결과에서는 구조 분석 결과도 부분적으로는 다소 차

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월세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 비율과 지출시 액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에 따라서도 각 항목의 세출 비율은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항목은 어린이집 건물 소유 형태의 차이보다는 차이가 약하게 나타났다. 사실, 보육 관계자 간담회 결과, 공공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의 동일인 여부나 대표자의 1개 어린이집 운영 여부는 실제와 서류상의 괴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의미 없는 지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 IV.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사후관리

###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은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sup>22)</sup>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중 1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여야 하고, 보육교사 월 급여는 최저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sup>23)</sup>

〈표 IV-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기준	비고
-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내 90점 이상 유지	2011년 80점 이상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 지급	
- 운영시간 평일 19:30까지 운영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준수	
-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아동 생명,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필수 가입	
- 사후 품질관리 의무 참여: 설명회, 자율공부 모임, 운영컨설팅 등	
- 상세 정보 주기적 공개	
- 1기관 1 카드 사용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운영시간은 반드시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sup>24)</sup> 또한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

22) 2012년 7월 이전 선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재인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80점 이상, 2013년 7월부터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90점 이상이어야 공공형 유지가 가능함.

23)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함.

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 투명성을 위하여 1기관 1카드를 적용한다(표 IV-1-1 참조).

이러한 운영기준은 서울시 운영기준 및 지원 조건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지원조건 중에서 몇 가지 언급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 서비스 1개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취약보육의 특성이나 요구도에 비추어 비교적 현실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둘째 안심보육에서는 위생관리 부분이 특이하다.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공간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은 2014년 말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며, 보육교직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관리에서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모든 예산 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지출하도록 한다.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하고 필요경비도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타 사항으로는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하며,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부표 2 참조). 이외에 지원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 4대 보험 보육교직원 전원 가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각종 기준을 어길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평가인증 취소 시,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각종 행정처

24) 기준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분을 받은 경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표 IV-1-2 참조).<sup>25)</sup>

〈표 IV-1-2〉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기준

취소 조건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표 IV-1-3〉 사후 관리체계 필요성: 보육관계자 의견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5점 평균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평가인증 점수 90점 유지	-	1.0	3.0	42.0	54.0	100.0(100)	4.49
취약보육 1개 이상 실시	1.0	2.0	15.0	49.0	33.0	100.0(100)	4.11
보료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	1.0	1.0	5.0	44.0	49.0	100.0(100)	4.39
담임교사 급여 국공립 1호봉 이상	-	3.0	6.0	29.0	62.0	100.0(100)	4.50
평일 7:30까지 12시간 운영	-	4.0	20.0	45.0	31.0	100.0(100)	4.03
특별활동 관리지침 준수	-	1.0	6.0	46.0	47.0	100.0(100)	4.39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	3.0	33.0	64.0	100.0(100)	4.61
상세 운영 정보 공개	-	-	5.0	27.0	68.0	100.0(100)	4.63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	-	4.0	31.0	65.0	100.0(100)	4.61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	1.0	6.0	38.0	55.0	100.0(100)	4.47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러한 사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육관계자들은 상세 운영 정보를 공개,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 가입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도 모두 4.6점

25)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시설은 시정명령 후 정해진 기간까지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공인 취소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상이다. 가장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응답은 평일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항목인데,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서도 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점 평균 4.03이다. 즉,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표 IV-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운영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13년 조사에 의하면 특히 특별활동 적정관리지침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 선택권 보장 지침 준수를 비교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33.4%,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40.4%가 특별활동을 의무 수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4.7%,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47.1%이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경향성은 보였다(표 IV-1-4 참조).

〈표 IV-1-4〉 특별활동 부모 선택 여부: 부모조사 결과

구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계(수)	단위: %(명)
					$\chi^2(df)$
국공립 어린이집	54.7	11.9	33.4	100.0(653)	9.3(4)
공공형 어린이집	47.1	12.5	40.4	100.0(673)	

자료: 서문화·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에 추가 납부하는 특별활동비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3만원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약 4만 6천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집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납부한다는 비율이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약 9% 정도였다(표 IV-1-5 참조).

또한 기타 비용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1만 2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자는 평균 2만 2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공형어린이집에서 기타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특별활동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납부한 총 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약 4만 3천원,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약 6만 8천원으로 산출되어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평균적으로 2만 5천원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IV-1-5〉 어린이집 납부 비용: 기타 필요 경비: 부모조사 결과

단위: %(명), 원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	10만원 이상	계(수)	비용 평균
<b>특별활동비</b>						
국공립 어린이집	34.7	36.9	25.5	2.9	100.0(1,000)	30,775.4
공공형 어린이집	32.7	18.4	40.0	8.9	100.0(1,000)	46,171.5
$X^2(df)/t$	33.9(6) <sup>***</sup>					-7.6 <sup>***</sup>
<b>기타 비용</b>						
국공립 어린이집	59.7	32.0	7.1	1.2	100.0(1,000)	11,992.5
공공형 어린이집	55.3	29.2	9.8	5.7	100.0(1,000)	21,643.0
$X^2(df)/t$	36.6(3) <sup>***</sup>					-5.2 <sup>***</sup>
<b>총계</b>						
국공립 어린이집	17.6	39.5	37.5	5.4	100.0(1,000)	42,768.0
공공형 어린이집	16.7	20.3	41.6	21.3	100.0(1,000)	67,814.5
$X^2(df)/t$	160.3(3) <sup>***</sup>					-9.3 <sup>***</sup>

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p < .001$ .

## 2.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중심의 인프라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공립을 대체하여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형태이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상향시켜서 구조적으로 질 높은 보육이 가능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후관리는 2011년 하반기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사후관리 사업은 자율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공부모임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별 맞춤형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 공공형어린이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자율공부모임 체계 구축과 운영

### 1) 자율공부모임 체계 구축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 대체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우수한 수준의 어린이집이 선정되기는 하지만, 설립유형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인 구조이기 때문에 국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직원의 수준에 따라 좌우되므로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고 처우가 낮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교육만으로 체질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사후관리는 어린이집 교직원 스스로 주도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자율공부모임 체계가 구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질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교직원 스스로가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주도적 논의과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자율공부모임의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자율공부모임은 전국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권역별 체계로 구축되었으며, 그 권역은 논의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10~15개소 내외의 소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도입 당시 자율공부모임은 전국 17개 권역 68개 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세종시 신설과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의해 2014년 3월 현재 18개 권역 142개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대상별 자율공부모임 운영

자율공부모임은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과 기존 공공형어린이집을 구분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각각 차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율공부모임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주제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과정은 주제에 맞는 전문 강사진의 특강, 이어서 소모임별·어린이집별로 위

크숍이 연계되어 개선점과 사례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가) 신규선정 공공형 교직원 대상 기본과정 운영

신규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자율공부모임 기본과정은 먼저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직원에게 공공형 사업의 목적과 정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재정립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며, 신규선정 공공형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주제의 특강과 워크숍이 진행된다(표 IV-2-1 참조).

〈표 IV-2-1〉 자율공부모임 기본과정 대상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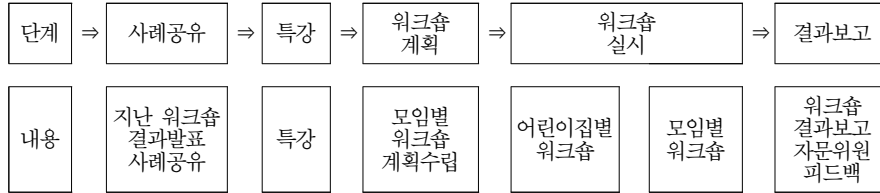
구분	대상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 운영관리	원장	-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문서관리 - 어린이집 원내 교사교육 -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재무회계 운영
함께 크는 공공형어린이집 교사	보육 교사	-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 평가 - 유아반, 영아반 운영하기 - 아동의 권리 존중 - 영유아 관찰과 평가

2013년도에 진행된 기본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원장에 대한 기본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문서관리’ 및 ‘합리적인 재무회계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가 95.71%, 9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과정 계획·운영·평가가 97.1%, ‘영유아반 운영하기’가 97.6%, ‘영유아 관찰 및 평가’가 95.7%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나) 기존선정 공공형 교직원 대상 심화과정 운영

신규 선정된 당해 연도에 기본과정을 마친 공공형어린이집은 다음 해부터 심화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기본과정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은 2개월 주기로 특강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자율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교직원 간 적극적인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그림 IV-2-1, 표 IV-2-2 참조).



〈그림 IV-2-1〉 자율공부모임 심화과정 진행과정

〈표 IV-2-2〉 자율공부모임 심화과정 대상 및 내용

	구분	내용
2013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환경 -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 어린이집 운영평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 - 원내 교사교육
		- 효과적인 부모상담
2014		-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어린이집과 가족간의 연계
		- 자유놀이의 의미와 실제 - 보육과정 계획과 운영의 실제

자율공부모임 심화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율공부모임의 특강강사, 자료, 내용의 적절성 등 모든 항목에서 95%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에 대해서도 9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공형 보육교사 대상 연수(시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자율공부모임이 주로 기본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원장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면, 2014년부터는 보육교사 대상 연수가 신설되어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는 보육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보육과정 운영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규모 실습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4년에는 시범적으로 8개 팀 3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총 5회차에 걸쳐 집중 연수가 실시되는데,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제 보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에 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실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 나.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컨설팅 제공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은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중 자율 공부모임과 함께 큰 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분야별로 훈련된 전문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상향화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품질관리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급·간식 위생 및 건강과 안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컨설팅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되도록 지원하는 재무회계 컨설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율공부모임이 교직원들의 자율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컨설팅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수준에 따라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컨설팅 제공

운영컨설팅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위생(영양 및 위생관리), 건강(청결 및 건강관리)과 안전(시설안전 및 영유아 보호 등)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200개소에 한하여 1개소당 2회 제공된다. 첫 번째 컨설팅이 실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두 번째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때에는 첫 컨설팅에서 지적된 미흡한 점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보육과정 등 추가 영역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현재 운영컨설팅은 전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난 영역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었으며, 1차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개선실태를 살펴보면 급·간식 위생 영역이 98.7%, 건강(청결 및 건강관리) 영역이 97.2%, 안전(시설안전 및 영유아 보호 등) 영역이 94.7%로 나타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 영역의 미흡사항을 살펴보면 단기간 개선이 어려운 시설, 설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컨설팅에 대한 도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 200개소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어린이집(190개소)의 96.3%가 어린이집 운영과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제공

공공형어린이집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재무회계 컨설팅은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개별 공공형어린이집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관련 문서를 토대로 재무회계 관리상태를 진단하고, 관리 운영 수준에 따라 1:1 맞춤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재무회계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작성, 유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재무회계 컨설팅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재무회계 코디네이터를 양성, 교육하여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3%의 어린이집에서 재무회계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표 IV-2-3〉 재무회계 컨설팅 도움 여부

							단위: %(명)
구분	많은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됨	약간 도움됨	전혀 도움되지 않음	무응답	계(수)	
비율	57.0	32.3	9.7	0.2	0.9	100.0(1,176)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컨설팅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도움이 된 내용은 '세입·세출 예·결산서의 적정 편성 및 집행'과 '운영 상황에 맞는 추경방법', '관·항·목 준수편성 및 처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표 IV-2-4〉 재무회계 컨설팅 도움 항목

							단위: %(명)
구분	세입·세출 예·결산서의 편성 및 집행	운영 상황에 맞는 추경 방법	관/항/목 준수 편성 및 처리	증빙서류 구비 및 관리	기타	무응답	계(수)
비율	37.1	22.5	20.6	16.9	1.6	1.3	100.0(1,358)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1차 방문 결과 1회 컨설팅만으로도 충분한지 질문한 결과, 1차 방문 이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2%, 2차 방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20%에 달해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표 IV-2-5〉 재무회계 컨설팅 횟수 의견(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차 방문으로 충분함	1차 방문 이후 지속적 지원 필요함	2차 방문 필요함	2차 방문 이후 지속적 지원 필요함	기타	무응답	계(수)
비율	25.0	48.2	8.8	11.5	5.5	1.0	100.0(1,188)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 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자율공부모임과 품질관리 컨설팅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후관리 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인프라 구축 관리 및 전문정보 제공이다. 이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과 평가를 받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공부모임을 비롯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문가들을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관리를 위해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자율공부모임 강사진을 대상으로 원고 집필과 강의방향 논의, 지난 자율공부모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와 자체 파견 중인 재무회계 컨설턴트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과의 업무 협력 지원을 통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까지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또한 사후관리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자료 지원으로는 어린이집에서 가정과 협력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생활이나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 등 부모교육 자료가 시리즈로 제작되어 e-book 형태로 보급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시설관리, 원아관리, 교직원관리, 가정과의 연계 등에 관한 정보를 월별로 정리한 운영가이드북이 제작되어 어린이집의 체계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보급되고 있다.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 현판과 지정서 제작 배부, 홍보물 제작 지원, 신뢰도

구축을 위한 사업보고대회, 자율공부모임 임원진 연수 등 다각적인 사후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시사점

우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운영기준에 비하여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공공형과 서울형은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맞춤서비스 1개 이상 실시, 모든 실내공간은 매일 청소 및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소독과 같은 위생관리,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참석,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원칙 등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에서도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특히 공공형 선정 기준들의 적정 수준은 어린이집 운영 시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일정 수준의 현원 유지도 필요하다. 이외에 취업모 자녀 비율 유지, 보육교사 급여 수준, 기타운영비의 평균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 역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 1,500여개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후관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정책제언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민간 일반 어린이집이 많아 공공형어린이집의 입지는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도 도움을 주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상 장점이 알려짐에 따라 이에 진입하고자 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선정 기준

공공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 예외 대상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자가와 임대 기준 이외에 자기 자본이나 부채 비율을 기본 신청 요건으로 선정 기준에 포함한다. 현재는 자가, 임대에 차이를 두고 감점으로 기타 운영비 비율을 두고 있으나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항에 따라서는 기타 운영비로 월 재정 지출 부담이 적은 전세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임대료나 용자금 이자가 보육료 수입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으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영이나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가나 임대나 모두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내실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부분도 개선의 대상이다. 재무회계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건물소유 변수보다는 차이가 확연하지 않으나 동일인이 아닌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지출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같이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는 어린이 집이나 어린이집을 자주 바꾸는 대표자도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정기준 점수 배점에서 가·감점 항목은 100점 점수 체계 안에 넣어서 점수산정 체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 기준 점수도 재검토한다. 특히 특정 내용을 가점으로 점수에 포함한 의도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싶은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목적인 대로 제대로 작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100점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가점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본적인 항목의 점수가 낮아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서 정원 중 유아 30% 이상을 가점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진입을 제한하기 어렵다. 최근 3년내 대표자 변경 지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를 잘 받으면 건물 소유형태나 교사 전문성 등과 같은 기본적 항목들의 점수가 낮거나 0점 이하를 받아도 공공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셋째, 평가인증 기준 점수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하인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에서 퇴출하게 되어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 중 일부는 평가인증 점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이 92점 이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하한선으로 질 높은 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고 자부하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시 신규 신청자와 차별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 간에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초창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기관과 이후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기관의 편차가 있다. 초기에 지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이 아닌 다른 대표자를 가진 기관도 있다. 기준이 변경된 만큼 새로운 지정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 나. 지원 기준

운영금 지원이 교사의 급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간별 운영비에서 교사 수나 반당 지원으로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점차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 수준은 어린이집 규모별로

일정하지 않다.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지원금은 교사 수에 관계 없이 아동 정원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체계는 영아 반을 늘리면 교사 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아동 정원에 따른 지원 방식은 원아 수가 적고 교사가 많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불리하다. 반면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이 많은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비교적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기도 한다. 지원 조건을 교사 인건비와 연동시키고 있으면서 아동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동수로 성과를 평가하려는 평가 방식이 어린이집 운영과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수준을 국공립 1호봉 이상으로만 정하는 것도 실제 교사와 보육의 질에게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 인건비의 고정은 장기적으로 교사 질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여건이 조성되고 실제 재정 지원이 개선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처럼 연차에 따라 호봉을 반영하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 다. 운영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수준 강화와 더불어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은 모자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국공립과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와 역차별 우려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취약계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민간 인프라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울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에도 선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등으로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급 교사 비율, 취약보육 실시,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 운영비 지출 비중 등은 공공형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다. 연차별로 자체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클린카드 사용, 1시설 1계좌 사용,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다. 운영지원금을 사용처의 항목 없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므로,

사용처 및 용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이 교사 인건비 이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 또는 사용 불가능한 항목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활동적정관리지침 등 정부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 라. 교육과 컨설팅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운영 컨설팅뿐 아니라 보육과정에 관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재무회계 컨설팅을 수행하여도 재무회계 등의 지식이 부족하며 회계관리가 잘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으므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사업 대상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원장 또는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에 효과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교직원이니만큼 교직원 전체가 직접적인 역량강화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단기간 내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셋째, 교육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한다. 교직원의 학력 또는 경력, 맡고 있는 업무 등 다양한 교직원의 배경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여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한 인프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취약한 교직원 인프라의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고 어린이집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하는 사후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교직원 워크숍을 수행하고,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직원의

자부심 독려를 통한 주도적인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질 높은 어린이집의 규모를 확충할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선정 기준을 파악하고 재정 분석을 통하여 국공립이나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 이후 선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지원도 2013년 하반기부터 구간을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도 다소 증액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나 부모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다. 2013년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비용과 급간식 관리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만족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기제로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3/4 정도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서문희·이혜민, 2013).

당초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를 위하여서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선정, 운영 기준과 더불어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투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으로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초기 투자시 타 인자본의 비중은 보육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물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자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에는 선정 기준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진(2013).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교사 효능감 비교.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행(2013).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환(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기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141~173.
- 김현숙(2013).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을 경험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이야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은아(2013).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경변인 및 교사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주(2013). 공공형과 비공공형 어린이집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비교 연구-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11-2014). 각 연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1. 4. 26). 보도자료: “민간 어린이집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거듭나는 길!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개최-”(http://www.mw.go.kr에서 인출)
-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유해미·김종숙·신운정·윤자영·김혜진(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 구축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2014).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신효숙(2014). 공공형과 일반형어린이집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새봄(2013). 공공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경(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공인제도 실시에 관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식비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갈현숙·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어린이집 현황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201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자료.
-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 부 록

---

## 부록 1. 부록 표



〈부표 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 특이 사항

구분	내용
①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24시간,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 등)을 1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관할 자치구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가) 모니터링·컨설팅에 참여 및 지도점검에 협조 나) 급식관리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지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 모든 실내공간(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화장실, 계단 등)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2014년 말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은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라 관리 •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 • 보육교직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에 참석
③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a href="http://www.aseoul.co.kr">http://www.aseoul.co.kr</a> )으로 회계 관리하고 모든 예산 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함. -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급(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는 아이사랑카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나) 보육료 등의 수납 - 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 - 필요경비는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 수납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급품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개인용 소모품(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④ 기타	-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를 준수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자료: 서울특별시(2014).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부표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구분	내용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인건비의 80% 지원</li> <li>-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li> <li>-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li> <li>- 취사부(1인): 인건비의 100% 지원</li> <li>-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li> <li>-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li> <li>-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신규)</li> </ul>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다만, 기능보장비는 제외)</li> <li>-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기준으로 지원하고, 중식비는 미지원</li> </ul>
③ 기타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보육료 수입의 10%(현원기준)</li> <li>- 아동 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 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li> <li>-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li> </ul>
④ 환경개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li> <li>-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li> </ul>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계시간 미포함)</li> </ul>

자료: 서울특별시(2014).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연구보고 2014-01

---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

**발행일** 2014년 6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84-8 93370